

연구보고 2017-17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유해미 이민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유해미 이민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이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등으로 인해 조부모 또는 민간 베이비시터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긴급보육 문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시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어왔다. 특히 자녀가 아픈 경우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어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휴가를 얻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나,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보육 실태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일본의 환아보육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긴급보육 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지원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등에 응해주신 전국 지역의 부모님들, 그리고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여 고견을 주신 현장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차 례

요 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9
II. 연구의 배경	14
1. 선행연구 검토	14
2. 긴급보육 지원 정책 현황	23
3. 일본의 환아보육 지원제도	41
III.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51
1. 어린이집 이용 및 긴급보육 실태	51
2. 긴급보육 시 지원 요구	62
IV. 정책 제언	83
1.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지원의 기본 방향	83
2.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85
참고문헌	92
부록	95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모용	97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105

표 차례

〈표 I-3- 1〉 설문조사 항목_부모 대상	10
〈표 I-3- 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11
〈표 I-3- 3〉 심층면담 일시 및 조사내용	12
〈표 I-3- 4〉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	12
〈표 II-1- 1〉 맞벌이 가구의 기관보육·교육 이용 만족도	14
〈표 II-1- 2〉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15
〈표 II-1- 3〉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15
〈표 II-1- 4〉 긴급보육 시 주양육자	16
〈표 II-1- 5〉 긴급 대리양육 시 도움을 받는 사람(기관)	17
〈표 II-1- 6〉 맞벌이 가정 긴급 보육 시 불편사항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18
〈표 II-1- 7〉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미이용 사유(2014)	20
〈표 II-1- 8〉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0
〈표 II-1- 9〉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이용 만족도	21
〈표 II-1-10〉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22
〈표 II-1-11〉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22
〈표 II-2- 1〉 대체교사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26
〈표 II-2-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운영지원 내용(2016)	26
〈표 II-2-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운영지원 현황(2012-2016)	27
〈표 II-2- 4〉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추진 현황(2016)	29
〈표 II-2- 5〉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체계	32
〈표 II-2- 6〉 서울시 우리 동네 아이돌봄기동대 근무 조건	36
〈표 II-2- 7〉 서울시 우리 동네 아이돌봄기동대 근무 조건	37
〈표 II-2- 8〉 서울시 긴급보육 거점시설 시범운영 추진 계획	38
〈표 II-2- 9〉 서울시 긴급보육시설 시범운영 세부 내용	38
〈표 II-2-10〉 경기 파주시 긴급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40
〈표 II-3- 1〉 니시노미야시의 환아보육 제도 이용 절차	48
〈표 II-3- 2〉 오키나와현 가테나초의 환아보육 적용대상 증상	49

〈표 III-1- 1〉 어린이집 등원 시각	51
〈표 III-1- 2〉 어린이집 하원 시각	52
〈표 III-1- 3〉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보육 필요시간 충족 여부	53
〈표 III-1- 4〉 기관 이외 서비스 병행 이용 여부	55
〈표 III-1- 5〉 어린이집 이외 병행서비스 내용	56
〈표 III-1- 6〉 월 평균비용/이용부담 정도	57
〈표 III-1- 7〉 긴급보육 어려움 여부	58
〈표 III-1- 8〉 긴급보육 발생 빈도	58
〈표 III-1- 9〉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 등원하지 못한 연간 횟수(중복응답)	61
〈표 III-2- 1〉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 서비스_전반	63
〈표 III-2- 2〉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 서비스_자녀돌봄 휴가 제외 시	64
〈표 III-2- 3〉 가정파견 대체교사보다 기관을 더 선호하는 이유	65
〈표 III-2- 4〉 기관보다 가정파견 대체교사를 더 선호하는 이유	67
〈표 III-2- 5〉 가정파견 대체교사의 자격요건_인구학적 특성별	68
〈표 III-2- 6〉 가정파견 대체교사의 자격요건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68
〈표 III-2- 7〉 대체교사 긴급보육 파견 시 희망 이용비용 수준	71
〈표 III-2- 8〉 돌봄인력의 이용비용 수준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71
〈표 III-2- 9〉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시작 시각_전반	72
〈표 III-2-10〉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시작 시각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73
〈표 III-2-11〉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종료 시각_전반	73
〈표 III-2-12〉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종료 시각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74
〈표 III-2-13〉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종합	74
〈표 III-2-14〉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_전체	75
〈표 III-2-15〉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76
〈표 III-2-16〉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만 36개월 미만이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_전체	76
〈표 III-2-17〉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만 36개월 미만이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77
〈표 III-2-18〉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_전체	77

〈표 III-2-19〉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78
〈표 III-2-20〉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가 전액 부담한다_전체	79
〈표 III-2-21〉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가 전액 부담한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79
〈표 III-1-22〉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토,일,공휴일 제외)_전체	80
〈표 III-2-23〉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토,일,공휴일 제외)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81
〈표 III-2-24〉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한다_전체	81
〈표 III-2-25〉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한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82

그림 차례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흐름도	9
[그림 II-2-1] 대체교사 직원 현황(2012-2016)	24
[그림 II-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도	31
[그림 II-2-3]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체계도(2017)	32
[그림 II-2-4]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흐름도(2017)	34
[그림 III-1-1] 긴급보육 경험 상황(중복응답)	60
[그림 III-1-2]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돌봄인력 및 기관	62

요 약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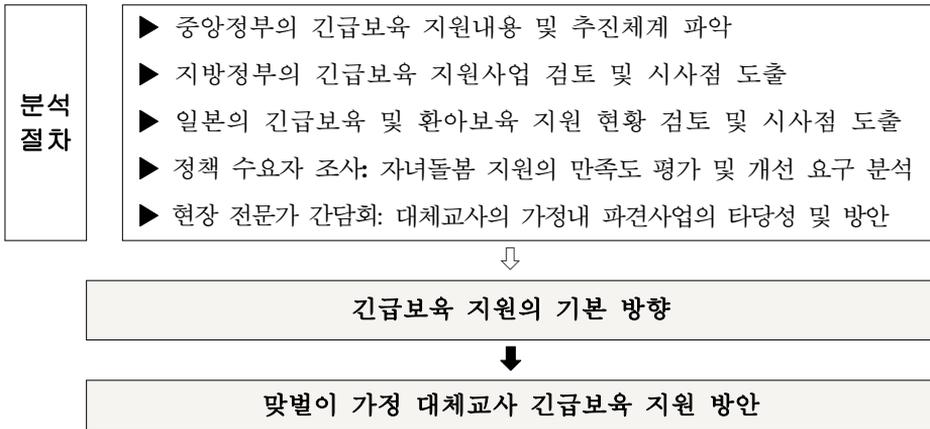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종일제보육 운영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는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보호를 요하므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대표적인 긴급보육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질병, 사고 등으로 어린이집에 단기간 동안 등원할 수 없는 긴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모색함.
 -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시 애로사항 및 요구를 파악하고, 특히 정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가정으로 대체교사 지원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 운영사항을 제시함.

나. 연구 내용

-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어린이집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지원 제도를 검토함.
 - 긴급보육 지원 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미취학 아동을 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보육 수요를 파악하고, 특히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자녀가 아픈 경우의 대응 방식 및 그 만족도를 분석함.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지원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대체교사의 가정내 파견사업의 추진체계, 시범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등을 제시함.
- 연구 절차는 이하와 같음.



다. 연구 방법

문헌연구 및 온라인 자료 조사

- 보육사업안내 등에서 긴급보육 지원내용을 파악하고, 맞벌이 가정의 보육 시 애로사항 및 긴급보육 실태 및 관련 제도 만족도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지방정부(서울시, 파주시, 포항시 등) 차원의 긴급보육 지원과 일본의 맞벌이 가정 보육지원 및 환아 대상 보육지원 내용을 조사함.

설문조사

-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와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함.

심층면담

- 심층면담은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를 심도 깊게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취업모 중 자녀연령을 구분하여 총 4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함.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간담회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대체 교사 긴급지원 방안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모색함.

2. 연구의 배경

가. 지방정부의 긴급보육 지원 정책 현황

서울시: 긴급보육 거점시설 운영

- 서비스 이용시간은 18시~22시, 이용대상은 미취학 아동, 이용료는 시간당 3천원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함.

경기 파주시: 긴급(당일) 아이돌봄서비스

- 당일 갑작스러운 부모의 야근, 출장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함.

강원 포천시: 원더마마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포항시 직장맘, 직장대디 또는 일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간당 5천원, 기본 2시간, 1일 4시간 이내로, 아이 병원픽업서비스,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귀가 등을 제공함.

나. 일본의 환아보육 지원제도

일본의 환아보육 지원은 민간의 소규모 보육실 등과 같은 곳부터 병원 내에 마련된 환아 보육 전문기관 등 다양함.

- ①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환아보육실, ② 병원이나 의사회가 운영하는 환아보육실, ③ NPO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운영하는 환아보육, ④ 베이비시터나 민간기업의 일시보육, 환아보육 등 다양함.

방문형 환아, 병후 아동 보육 이용요금 지원의 운영 사례로서, 1) 니시노미야

시와 2) 오키나와현 가데나초 사례를 각각 제시함.

□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도출함.

- 환아보육의 대상아동 및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서비스 유형 측면에서 시설형과 자택형 등으로 다양화함.
- 돌봄인력 자격은 이원화되어, 보육사 또는 간호사이며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적용하는 경우와, 자격증 없이 총 13회 이상의 인터넷 강의를 이수한 후 1차, 24시간 실습, 인정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됨.
- 운영 절차는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정 기간 내(익월 15일까지)에 시정촌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지급이 타당한 상황인지를 진단한 후 사후 지급함.

3.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지원 요구

가. 어린이집 이용 및 긴급보육 실태

□ 서비스 병행 이용 및 이용비용 부담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이외에 추가로 이용 중인 기관 또는 돌봄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로 나타남.
- 월 평균 이용비용은 민간베이비시터가 640,000원으로 가장 많고(기타 제외), 그 다음은 조부모였으며, 학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 긴급보육 실태 및 대응

- 어린이집을 이용 부모의 자녀를 맡길 때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는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많고, 연간 해당 빈도가 5회 이상인 비율이 53.6%로 조사됨.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간 경우 자녀를 돌봐준 사람 또는 기관으로는 조부모 등 혈연 42.7%, 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봄 40.5%로 조사됨.

나. 긴급보육 시 지원요구

□ 자녀가 아픈 경우 지원요구

-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부모 직접 돌봄이 58.7%로 높게 나타남.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경우 희망 서비스로는 의료시설내 부설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 29.0%였으며, 대체교사 가정 파견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14.3%에 그침.

□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요구

- 대체교사 자격요건으로는 '보육교사와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임.
- 대체교사의 희망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6,000~8,000원이 51.4%를 차지함.
- 대체교사 긴급지원 서비스의 희망 시작 시각은 오전 8시 37.4%, 오전 9시 34.6%이며, 희망 종료 시각은 오후 6시 이후가 69.1%로 주를 이룸.

4. 정책 제언

가. 긴급보육 지원의 기본 방향

-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 긴급보육 시 지원 요구가 다르므로,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부모 선택권을 보장함.
-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아픈 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휴가를 통해 돌보는 것을 지향하되, 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모색되어야 함.
 - 아픈 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은 지원 대상 및 적용사항을 명료화해야 함.
 - 대체교사 교사 긴급보육 지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기존 사업(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돌봄인력(대체교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함.

나.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적용대상 아동

- 6개월 이후 아동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증상으로는 의료기관에 의한 입원, 치료 필요는 없으나,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적인 질환(감시, 소화불량 등), 전염성 질환(홍역, 수두, 풍진 등) 등을 포함함.

인력 양성 및 관리 사항

- 자격요건은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되, 지원연령은 보다 확장할 수 있음.
- 교육내용으로는 아픈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함.
- 사후관리로서 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를 대체교사 전달하여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에도 활용함.

서비스 이용비용/운영시간

-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당 7,000원에서 8,000원선이 고려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운영함.

추진체계/시범사업

- 사업 실시 주체는 자치구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함.
- 시범 기관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365어린이집 등)을 지정하여, 아픈 아동에 대한 대체교사 신청 공지,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종일제보육 운영을 의무화 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는 그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5점으로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만족도 3.4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유해미·배운진·김문정, 2014: 99).¹⁾ 또한 같은 조사에서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에 대한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에서도 평균 3.6점(만점 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유해미·배운진·김문정, 2014: 99: 100).

현행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 시는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69).²⁾ 어린이집은 주 6일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 시 또는 하절기 집중휴가 기간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이때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 69).

한편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년 8월 30일). 감염아동 특별지원은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 비용의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아동의 병원 이용 병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년 8월 30일). 질병아동의 경우는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파견 방식의 서비스가 요구되나

1)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아이돌보미의 공급 부족, 서비스 제공시간의 부족 등으로 긴급보육 발생 시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일보, 2017. 8. 7 ; 주간동아, 2016. 11, 16)³⁾.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아플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는 부모(65.9%) 다음으로 혈연 29.6%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보미 이용률은 각각 2.1%와 0.6%로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냈다(김은설 외, 2016: 215)⁴⁾.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질병, 사고 등으로 어린이집을 단기간 동안 등원할 수 없는 긴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시 애로사항 및 요구를 파악하고, 현행 긴급보육 지원 제도 현황 및 한계점을 규명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관할 부처(보건복지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대표적인 돌봄 공백으로 지적되어 온 어린이집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가정으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위주로 모색하였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어린이집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지원 제도를 검토한다. 즉 어린이집 긴급보육과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관련규정을 조사하여 한계점을 파악한다.

둘째, 미취학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보육 수요를 파악하고, 특히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자녀가 아픈 경우 등 대응 방법 및 그 만족도를 분석한다. 즉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수요 및 주요내용과 어린이집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시 대응 방식 및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긴급보육 지원 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외 사례로는 일본의 환아전문 보육원 설치·운영 등 긴급보육 지원 현황 및 시

3) 주간동아(2016. 11. 16). 속 터지는 아이돌봄서비스(검색일자: 2017. 10. 25) ; 한국일보(2017. 08. 07). 호응은 좋는데 하나둘씩 떠나는 아이돌보미(검색일자: 2017.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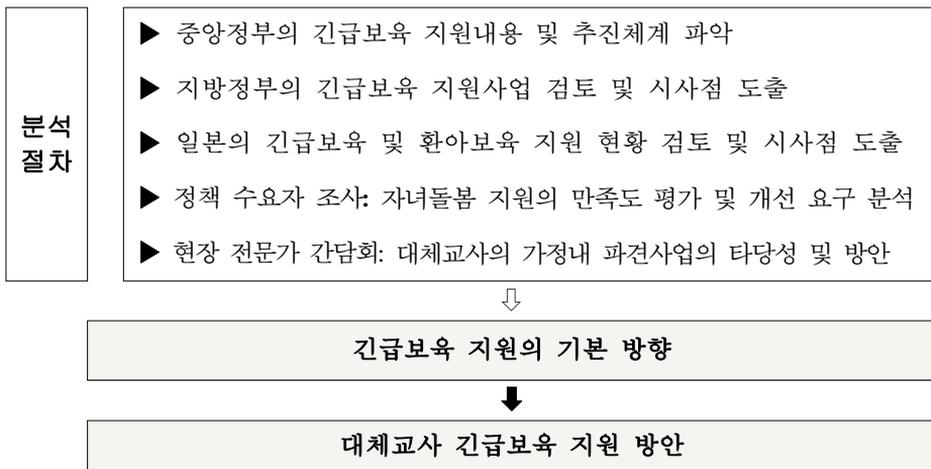
4) 김은설·유해마·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사점을 도출한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긴급보육 거점시설 운영”, 파주시 “긴급(당일)돌보미”, 포항시 “원더마마 서비스” 등 지방정부의 긴급보육 지원 현황을 다루었다.

넷째, 긴급보육 수요조사 결과와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보육 실태와 지원방식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대체교사 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국내외 사례와 현행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현황, 그리고 긴급보육 시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반영하여 긴급보육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체교사의 가정내 파견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사업 추진 체계, 시범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등을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3-1]과 같다.



[그림 1-3-1] 연구 절차 및 흐름도

3.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및 온라인 자료 조사

보육사업안내 등에서 긴급보육 지원내용을 파악하고, 맞벌이 가정의 보육 시 애로사항 및 긴급보육 실태 및 관련 제도 만족도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서울시, 파주시, 포항시 등) 차원의 긴급보육 지원과 일본의 맞벌이 가정 보육지원 및 환아 대상 보육지원 내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와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서 구축한 온라인 조사대상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을 무작위 방식으로 1,000명을 선정하였다(표 I-3-1 참조).

조사내용은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긴급보육 실태 및 지원제도 이용 경험 및 서비스 만족도, 긴급보육 시 지원요구(대체교사 파견 방식의 도움 정도 인식) 등이다(표 I-3-2 참조).

〈표 I-3-1〉 설문조사 항목_부모 대상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막내)자녀 연령
	- (막내)자녀가 이용 중인 반 연령
	- (막내)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 유형
	- (막내)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의 등·하원 시각
	-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추가 돌봄기관 이용 여부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 추가 돌봄인력(기관) 이용 형태와 비용 및 부담정도
	- 긴급보육 시 어려움 유무 및 발생빈도
	- 긴급보육 사례
	- 긴급보육 시 돌봄인력(기관)
	- 긴급보육 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 긴급보육 시 필요한 서비스 유형
	- 돌봄인력(대체교사) 가정 파견시 필요사항(자격요건, 비용, 서비스 제공 시각, 서비스 이용 시 동의 정도)

(표 I-3-1 계속)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취업여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녀 특성, 월 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거주 지역 도시규모
응답자 가구 현황	-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가정 여부, 영유아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표 I-3-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사례수)	구분	비율(사례수)
자녀연령1		거주지역	
0세	4.4(44)	광역시	39.8(398)
1세	15.7(157)	중소도시	53.9(539)
2세	28.1(281)	읍면지역	6.3(63)
3세	25.9(259)	이용기관 유형	
4세	16.6(166)	국공립	21.1(211)
5세	9.3(93)	사회복지법인	4.9(49)
자녀연령2		법인단체 등	6.0(60)
영아	48.2(482)	민간	45.4(454)
유아	51.8(518)	가정	19.1(191)
총 자녀수		협동	0.3(3)
1명	54.7(547)	직장	3.2(32)
2명	41.1(411)	월 가구소득	
3명	3.9(39)	200만원 이하	2.3(23)
4명	0.3(30)	400만원 이하	31.9(319)
성별		600만원 이하	46.3(463)
남성	50.8(508)	600만원 초과	19.5(195)
여성	49.2(492)	추가 돌봄 여부	
		병행	16.2(162)
		기관 단독 이용	83.8(838)
계(수)		100.0(1,000)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위의 <표 I-3-2>와 같다. 막내자녀 연령이 0~5세를 포괄하되, 영아는 48.2%를 차지하며, 구체적으로는 2세아가 28.1%, 3세아가 25.9%로 나타난다. 총 자녀수는 1명인 가구가 54.7%로 가장 많고, 2명은 41.1%이다. 남성과 여성이 절반 수준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거주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53.9%이고 읍면지역 거주자는 6.3%로 나타난다. 월가구소득

은 400만 초과~600만원 이하가 4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200만원 이하 2.3%, 600만원 초과 19.3%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용 중인 어린이집 유형으로는 민간어린이집 45.4%, 국공립어린이집 21.1%, 가정어린이집 19.1%로 나타나며, 어린이집과 병행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16.2%를 차지한다.

3)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를 심도 깊게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취업모 중 자녀연령을 구분하여 총 4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I-3-3〉 심층면담 일시 및 조사내용

순번	면담 일자	조사내용
1	2017.10.14	- 아동 및 가구 특성 및 양육 실태 전반 -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긴급보육 시 애로사항 - 긴급보육 시(자녀가 아플 때) 대체교사 파견에 대한 수요
2	2017.10.14	
3	2017.10.23	
4	2017.10.24	

〈표 I-3-4〉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

순번	모 연령 (단)	최종학력	직업	고용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수	막내 자녀 연령 (단)
1	40세	대학원 이상	사무직	-	500~599만원	3명	2세
2	40세	4년제 대학 이상	전문직	자영업자	500~599만원	2명	12세
3	37세	대학원 이상	사무직	상용근로자	-	1명	3세
4	38세	4년제 대학 이상	사무직	상용근로자	500~599만원	2명	6세

조사내용은 긴급보육 시 대응 방식, 정부의 긴급보육 지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와 개선 요구, 자녀의 질병에 따른 대체교사 가정파견 지원의 필요성 등 주요 전반이다(표 I-3-3 참조).

조사 참여자는 사무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이며, 총 자녀수는 1~3명으로 다양하고, 자녀연령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령기를 포괄하였다(표 I-3-4 참조).

4)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어린이집 재원아의 질병 발생 시 대체교사 지원의 적용 방식 및 추진체계 등 도입 방안의 타당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 해소 등을 위해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시 애로사항 및 그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행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긴급보육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정부와 일본 정부의 긴급보육 지원 및 환아보육 지원 현황을 다루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1. 선행연구 검토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시 어려움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맞벌이 가정 긴급 보육 시 불편사항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점(5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유해미·배운진·김문정, 2014: 98)(표 II-1-1 참조).

특히 자녀 양육 시 어려움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과 자녀와의 시간 부족 다음으로, 긴급보육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표 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시간이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와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유해미·김아름·김진미, 2015: 121).

<표 II-1-1> 맞벌이 가구의 기관보육·교육 이용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평균 (5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시설 및 환경	0.3	3.6	29.0	49.4	17.7	100.0(1,034)	3.8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0.6	2.5	27.0	49.7	20.2	100.0(1,032)	3.9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1.0	4.0	31.2	45.6	18.2	100.0(1,028)	3.8
교사의 전문성	0.9	6.4	34.0	41.1	17.6	100.0(1,032)	3.7

(표 II-1-1 계속)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5점)
급·간식	0.5	6.1	34.4	40.4	18.6	100.0(1,027)	3.7
이용비용(보육료, 교육비 등)	3.2	13.1	34.6	30.2	18.9	100.0(1,027)	3.5
등원 시각	0.8	4.5	26.2	49.9	18.7	100.0(1,028)	3.8
하원 시각	1.4	8.5	27.8	44.6	17.7	100.0(1,028)	3.7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2.6	9.6	39.5	34.9	13.4	100.0(998)	3.5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	2.7	13.8	35.3	33.5	14.7	100.0(1,029)	3.4

주: 이용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98.

〈표 II-1-2〉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맞벌이 가구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명) 사례수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없다	(121)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91)
근무시간이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	(73)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72)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직장맘의 퇴근시간이 맞지 않는다	(58)
공휴일/휴일/방학 중 근무 시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	(49)
근무시간이 길어 아이가 늦게까지 기관에 있어야 한다	(34)
양육의 책임이 경제, 환경 등의 문제로 조부모에게 전가 된다	(26)
양육에 대한 회사, 사회적 배려가 없다	(25)

자료: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21.

게다가 취업모의 주된 자녀양육 시 어려움으로 긴급 상황 시 어려움은 이른 출근 등 근로시간과 보육시간과의 불일치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된다.

〈표 II-1-3〉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구분	이른 출근	퇴근시간	휴일 출근	긴급상황	부모참여 부담	단위: 점(명) (수)
전체	3.1	3.1	2.9	3.2	3.2	(98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2	3.2	3.0	3.3	3.3	(462)
유아	3.0	3.0	2.8	3.2	3.2	(527)
t	3.6**	2.8**	0.9	0.7	1.3	

(표 II-1-3 계속)

구분	이른 출근	퇴근시간	휴일 출근	긴급상황	부모참여 부담	(수)
전체	3.1	3.1	2.9	3.2	3.2	(989)
지역규모						
대도시	3.2	3.2	2.9	3.3	3.3	(322)
중소도시	3.1	3.1	2.9	3.3	3.3	(368)
읍·면	2.7	2.7	2.5	2.9	3.0	(299)
F	6.1	7.3**	5.4**	3.5*	1.9	
2012년	3.0	3.0	-	3.0	3.2	(938)

주: 1)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2) '부모참여 부담' 질문에 기관 미이용자(345명)는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수와 다름.

3) 해당 점수는 '어렵지 않음' 1점~'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_ 가구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109.

* $p < .05$, ** $p < .01$, *** $p < .001$

<표 II-1-4> 긴급보육 시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긴급 시						아플 때					계(수)
	부모	혈연	비 혈연	시간	아이	기타	부모	혈연	비 혈연	시간	아이	
전체	80.6	18.2	0.5	0.4	0.3	0.1	83.0	14.9	0.8	1.1	0.2	100.0(1,745)
영유아구분												
영아	81.7	17.4	0.3	0.2	0.3	-	84.9	13.9	0.2	0.8	0.2	100.0(1,016)
유아	79.4	19.0	0.6	0.5	0.3	0.2	81.1	16.0	1.3	1.3	0.2	100.0(729)
$\chi^2(df)$			5.7(4)					20.4(4)***				
보육연령												
0세	84.1	15.4	0.1	-	0.4	-	87.8	11.2	-	0.7	0.2	100.0(121)
1세	79.1	20.0	0.1	0.4	0.5	-	82.2	16.3	0.4	0.7	0.3	100.0(370)
2세	82.3	16.7	0.8	0.2	0.1	-	84.9	13.9	0.2	0.9	0.1	100.0(525)
3세	75.4	22.5	0.5	1.1	0.5	-	78.4	18.1	1.6	1.7	0.3	100.0(335)
4세	81.9	16.2	0.8	0.4	0.4	0.3	82.9	13.6	1.4	1.6	0.4	100.0(230)
5세	81.0	18.2	0.5	0.1	-	0.2	82.2	16.1	0.9	0.7	-	100.0(164)
$\chi^2(df)$			36.8(20)*					39.4(20)**				
지역규모												
대도시	79.8	19.0	0.5	0.3	0.3	-	81.8	15.6	1.3	0.9	0.3	100.0(550)
중소도시	80.4	18.4	0.4	0.3	0.3	0.2	82.4	15.3	0.5	1.6	0.2	100.0(669)
읍·면	82.6	15.7	0.7	0.8	0.3	-	87.4	12.3	0.1	0.1	0.1	100.0(526)
$\chi^2(df)$			6.9(8)					26.4(8)**				

(표 II-1-4 계속)

구분	긴급 시						아플 때					계(수)
	부모	혈연	비 혈연	시간 제육	아이 돌보미	기타	부모	혈연	비 혈연	시간 제육	아이 돌보미	
모취업여부												
취업	65.1	32.5	1.1	0.6	0.7	-	65.9	29.6	2.1	1.8	0.6	100.0(702)
휴직중	77.5	21.4	-	1.1	-	-	84.9	15.4	-	-	-	100.0(59)
미취업	90.4	9.1	0.2	0.2	0.1	-	93.4	5.8	0.1	0.7	-	100.0(970)
<i>x2(df)</i>	335.5(8)***						440.5(8)***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83.1	14.8	-	1.8	0.4	-	84.8	14.8	-	-	0.4	100.0(47)
150~199만원	93.9	4.7	0	1.4	-	-	95.6	3.2	-	1.2	-	100.0(80)
200~249만원	87.7	11.8	0.4	-	-	-	91.0	8.2	-	0.8	-	100.0(201)
250~299만원	91.3	8.2	-	-	0.4	-	92.0	6.0	-	2.0	-	100.0(235)
300~349만원	84.2	15.2	0	0.6	-	-	89.9	9.0	-	1.0	-	100.0(353)
350~399만원	85.7	12.6	0.4	-	0.6	0.7	85.7	12.0	1.2	0.4	0.6	100.0(171)
400~499만원	81.1	17.5	0.5	0.4	0.5	-	83.2	15.1	0.8	0.6	0.3	100.0(292)
500~599만원	70.7	27.6	0.7	0.8	0.1	-	74.0	23.8	0.7	1.4	0.1	100.0(168)
600~699만원	65.7	32.6	1.2	0.4	-	-	68.2	30.4	1.0	0.4	-	100.0(84)
700만원이상	53.5	43.9	1.5	-	1.1	-	53.9	38.8	4.1	2.2	1.1	100.0(104)
<i>x2(df)</i>	294.5(36)***						360.4(36)***					
2012년	61.3	33.4	2.8	-	-	0.8	77.4	20.2	1.3	-	-	100.0(1,536)

주: 1) 통계값은 기타값 결측 처리 후 분석함.

2) 2012년 조사결과 중 ‘어린이집’ 응답 비율, 긴급 시(1.7%), 아플 때(1.1%)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215.

* $p < .05$, ** $p < .01$, *** $p < .001$

<표 II-1-5> 긴급 대리양육 시 도움을 받는 사람(기관)

단위: %(명)

구분	조부	교육·보육기관	친인척	친구 이웃 동료	아이 돌봄 서비스	민간 서비스	일시 보육 기관	기타	없음	(수)	χ^2 (df)
전체	70.0	9.5	6.2	3.4	1.8	0.5	0.5	0.1	8.1	(1,302)	
자녀나이											
영영아	76.7	4.6	3.6	1.0	4.1	-	1.5	0.5	8.1	(197)	48.281** (16) ^a
영아	73.0	9.2	5.3	1.9	2.2	0.2	0.5	-	7.7	(42)	
유아	66.2	11.0	7.6	4.9	0.9	0.9	0.3	-	8.3	(65)	

(표 II-1-5 계속)

구분	조부	교육·보육기관	친인척	친구·이웃·동료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돌봄서비스	일시보육기관	기타	없음	(수)	χ^2 (df)
전체	70.0	9.5	6.2	3.4	1.8	0.5	0.5	0.1	8.1	(1,302)	
자녀수											
1명	73.0	8.5	5.1	1.7	2.5	0.4	0.6	0.1	8.1	(66)	57.143**
2명	70.1	7.6	7.6	4.3	0.8	0.8	0.4	-	8.3	(48)	(16)a
3명 이상	52.4	21.9	7.2	8.9	1.7	-	0.8	-	7.2	(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4.7	9.0	5.9	2.5	1.7	0.9	0.6	0.1	4.6	(67)	33.835
홀벌이	64.8	9.9	6.6	4.3	1.9	0.2	0.5	-	11.8	(62)	(8)a
가구소득											
250만원미만	60.2	10.2	10.2	4.1	2.0	-	1.0	-	12.3	(19)	
250~350만원	66.2	9.4	7.8	3.8	2.7	-	0.3	-	9.9	(374)	50.286**
350~500만원	72.7	7.9	4.1	4.0	1.4	1.1	1.1	-	7.6	(367)	(24)a
500만원이상	76.3	10.7	4.6	1.9	1.1	0.8	-	0.3	4.3	(366)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36-137.

** $p < .01$.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에서 긴급 상황 시 3.2%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 2016: 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가 긴급 시나 자녀가 아픈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각각 0.7%와 0.6%에 불과하였다(김은설 외, 2016: 215)(표 II-1-4 참조).

한편 대리양육이 긴급한 경우에는 주로 조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벌이 가정의 해당 비율은 74.7%였다(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136-137)(표 II-1-5 참조).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II-1-6>과 같다.

<표 II-1-6> 맞벌이 가정 긴급 보육 시 불편사항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저자	불편사항
유해미·배윤진·김문정 (2014)	- 맞벌이 가정의 기관보육·교육 이용 만족도에 대해 기관의 방학 운영 등의 운영일수에 대한 만족이 평균 3.4(5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만족이 평균 3.5(5점 만점)의 만족도를 나타냄

(표 II-1-6 계속)

저자	불편사항
유해미·김아름·김진미 (2015)	- 총 598사례의 맞벌이 가정 중, 자녀 양육 시 불편사항에 대해 '민고 맡길 만한 데가 없다' 121명, '근무시간이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 73명,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72명, '공휴일/휴일/방학 중 근무 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49명의 순으로 나타남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 (2016)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모가 자녀를 '기관에 맡긴다'(65.9%), '조부모에게 맡긴다'(16.0%), '육아전문인력에 맡긴다'(2.6%) 순으로 나타남. 육아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음 - 취업모의 자녀양육 시 어려움에 관해 긴급상황 및 부모참여 부담에 대한 어려움에 평균 3.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 아동이 아프거나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 부모 83.0%, 혈연관계 14.9%, 시간제보육 1.1%를 나타남. 영아보다는 유아,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비교적 부모가 아닌 혈연 관계인이 돌보는 비율이 높음.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 이용률은 1.8%와 0.6%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시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주로 조부모에게 74.7%가 도움을 받으며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일시보육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1.7%와 0.6%의 낮은 이용률을 보임

자료 :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98 ;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21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81, p. 109, p. 215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36-137.

나.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으로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조주은, 2014).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신뢰가 안가서' 30.9%, '등록 절차가 복잡해서' 1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가 매번 바뀌거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김은정·이진숙·최인선, 2014: 103).

〈표 II-1-7〉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미이용 사유(2014)

구분	빈도	단위: 명(%)
		비율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방법을 구함	4	(14.3)
돌보미 선생님이 매번 바뀌어서(바뀐다고 들어서)	3	(10.7)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17	(60.7)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3	(10.7)
이용 후 만족도가 낮아서	1	(3.6)
합계	28	(100.0)

자료: 김은정·이진숙·최인선(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3.

2015년 영유아 부모 대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유경험율은 영아종일제 돌봄 6.5%, 시간제 돌봄 8.5%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평균 3.29점,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평균 3.51점으로, 기관보육교육(3~5세 누리과정, 영아보육)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유해미·김아름·김진미, 2015: 112).

〈표 II-1-8〉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5점 평균)	전체(수)
	있음 비율	전체(수)		
출산전후휴가	43.9	100.0(1,045)	3.73	(459)
배우자출산휴가	12.8	100.0(1,045)	3.44	(134)
육아휴직	29.3	100.0(1,045)	3.82	(30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7.1	100.0(1,045)	3.50	(74)
시차출근제	7.6	100.0(1,045)	3.51	(79)
3~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45.4	100.0(1,045)	3.72	(474)
0~2세아 보육료 지원	50.0	100.0(1,045)	3.80	(523)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6.5	100.0(1,045)	3.29	(68)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8.5	100.0(1,045)	3.51	(89)
0~5세아 가정양육수당	57.5	100.0(1,045)	3.56	(306)

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수혜 경험 이용 만족도 평균점수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12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2%가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고, 서비스 이용율은 6.8%에 그쳤다(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174-175)(표 II-1-9 참

조).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이용 사유로는 34.7%가 기관 이용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4.5%가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179)(표 II-1-10 참조).

〈표 II-1-9〉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구분	인지 여부				$\chi^2(df)$	이용 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수)	만족도	F/t
전체	22.3	56.2	21.6	100.0(1302)	-	6.8(89)	2.5(0.74)	-
지역규모								
대도시	22.0	55.7	22.4	100.0(529)		6.9(37)	2.6(0.73)	
중소도시	22.2	58.1	19.8	100.0(553)	2.705(4)	6.4(35)	2.5(0.74)	0.193
농어촌지역	23.2	52.5	24.3	100.0(220)		7.8(17)	2.5(0.80)	
자녀나이								
영영아	12.7	52.8	34.5	100.0(197)		2.5(5)	2.6(0.55)	
영아	22.1	57.4	20.5	100.0(420)	29.549***(4)	6.3(26)	2.4(0.74)	1.263
유아	25.1	56.4	18.6	100.0(685)		8.4(58)	2.6(0.75)	
자녀수								
1명	18.9	55.6	25.5	100.0(696)		4.9(34)	2.7(0.57)	
2명	22.9	58.7	18.4	100.0(483)	32.789***(4)	7.0(34)	2.3(0.77)	2.769b
3명이상	38.7	49.3	12.0	100.0(123)		17.0(21)	2.6(0.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7	56.3	19.0	100.0(677)		9.6(65)	2.5(0.77)	
맞벌이아님	19.6	56.0	24.4	100.0(625)	7.809*	3.8(24)	2.6(0.65)	-0.339
가구소득								
250만원미만	23.4	51.0	25.5	100.0(195)		6.6(13)	2.9(0.64)	
250~350만원	17.9	58.0	24.1	100.0(374)		4.6(17)	2.6(0.79)	
350~500만원	23.5	58.8	17.7	100.0(367)	11.554(6)	6.3(23)	2.5(0.59)	2.061
500만원이상	24.8	54.4	20.8	100.0(366)		9.9(36)	2.4(0.80)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74-175.

* $p < .05$, *** $p < .001$

〈표 II-1-10〉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① 기관 이용 중	② 제도 모름	③ 도우미 신뢰 어려움	④ 대기자 많음	⑤ 비용 부담 됨	⑥ 신청 절차 복잡	⑦ 도우미 찾은 교체	⑧ 민간 보다 질 낮음	⑨ 기 타	(수)	$\chi^2(df)$
전체	34.7	34.5	11.7	5.0	4.6	3.2	0.9	0.7	4.7	(1,213)	
지역규모											
대도시	33.9	34.3	11.3	5.9	5.1	3.4	0.8	0.6	4.6	(493)	8.773 (16)
중소도시	34.7	34.3	13.2	4.8	4.3	3.1	0.8	0.4	4.5	(518)	
농어촌지역	36.5	35.5	8.9	3.4	4.4	3.0	1.5	1.5	5.4	(202)	
자녀나이											
영영아	5.2	50.2	17.7	3.6	6.3	4.2	1.0	0.5	10.9	(192)	132.80*** (16)
영아	30.3	37.8	11.3	5.6	5.1	3.3	1.0	1.0	4.6	(394)	
유아	46.4	27.6	10.2	5.1	3.8	2.8	0.8	0.5	2.8	(628)	
자녀수											
1명	28.5	39.0	12.3	5.0	4.5	2.9	0.8	0.6	6.5	(662)	40.891*** (16)a
2명	42.4	29.2	11.1	4.7	4.2	3.6	1.3	0.9	2.6	(449)	
3명 이상	40.7	29.1	10.7	6.8	6.8	3.9	-	-	2.0	(1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6	30.5	11.6	5.9	4.4	3.4	1.3	1.1	3.1	(612)	
맞벌이아님	30.7	38.5	11.8	4.2	4.8	3.0	0.5	0.2	6.3	(60.1)	
가구소득											
250만원미만	33.8	39.5	7.1	2.2	7.1	4.9	0.5	-	4.9	(182)	
250~350만원	32.8	38.3	12.1	3.1	5.1	2.5	1.2	0.3	4.8	(357)	39.459*
350~500만원	36.7	32.0	14.0	5.5	4.3	1.7	1.1	0.9	3.8	(343)	(24)
500만원이상	35.1	30.3	11.6	8.2	3.0	4.6	0.6	1.2	5.4	(330)	

주: 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②제도를 잘 몰라서 ③파견되는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④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⑤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⑥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⑦이용할 때마다 아이돌보미가 자주 교체되어서, ⑧민간 돌봄 서비스에 비해 질이 좋지 않아서, ⑨기타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79 재구성.
* $p < .05$, ** $p < .01$, *** $p < .001$

〈표 II-1-11〉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불편사항
조주은 (2014)	- 서비스 이용시간 부족과 이용의 불편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으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음. 이용시간이 집중되

(표 II-1-11 계속)

구분	불편사항
조주은 (2014)	- 는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김은정·이진숙 ·최인선 (2014)	- 과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였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60.7%)로 응답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신뢰가 안가서'(30.9%), '등록 절차가 복잡해서'(14.4%) 순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유해미·김아름 ·김진미 (2015)	-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결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6.5%,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은 8.5%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냄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및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9와 3.51의 만족도를 보임
권미경·박원순 ·엄지원 (2016)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모른다' 21.6%, 이용여부는 6.8%에 그쳐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이용만족도 또한 2.5%로 낮음 - 맞벌이 가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기관이용 중' 38.6%, '제도를 모른다' 30.5%, '도우미 신뢰 어려움' 11.6% 순으로 나타남

자료: 조주은(201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p. 39 ; 김은정·이진숙·최인선(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2, p. 103, p. 104 ;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12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74, 179.

2. 긴급보육 지원 정책 현황

맞벌이 가정 등의 긴급보육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국고지원, 지자체)과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그리고 지방정부(서울시, 파주시,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긴급보육 지원사업 현황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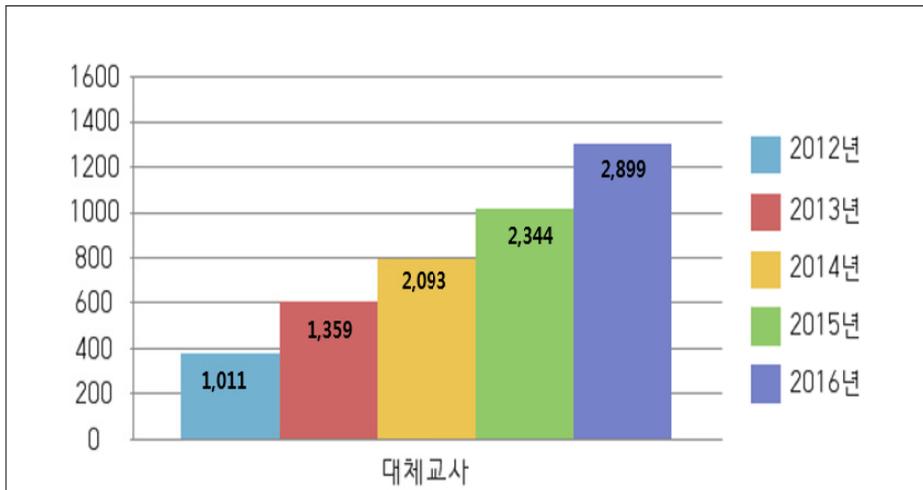
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국고지원(보건복지부) 지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각 사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 순위에서 일부 달리 적용된다.

1) 국고보조 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 직원 기준을 중앙센터 최소 10인 이상, 시도센터 5인 이상, 시군구센터 최소 4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2012년도에는 1,011명, 2013년도에는 348명(34.4%)이 증가한 1,359명, 2014년도에는 734명(54.0%)이 증가한 2,093명, 2015년도에는 251명(12.0%)이 증가한 2,344명, 2016년도에는 555명이(23.7%)이 증가한 2,899명으로 5개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23). 직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대체교사(대체교사 관리자 포함)로 전체 종사자수의 44.9%에 해당한다. 대체교사의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24).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p. 24.

[그림 11-2-1] 대체교사 직원 현황(2012-2016)

가) 지원내용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연중 계속 운영(월~금요일: 12시간, 07:30~19:30)/토요

일: 8시간(07:30~15:30)이 원칙이다(보건복지부, 2017: 68). 그러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대한 사전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69).

중앙정부는 긴급보육 발생 상황을 어린이집 휴원 명령, 임시휴원, 그리고 하절기 등 집중휴가 기간으로 구분한다. 먼저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에 관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 69).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역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휴원 명령과 유사하게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 69). 마지막으로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의 경우이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 휴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야 하며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이들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 69).

이와 같은 다양한 긴급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공백은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교사는 시설별로 1명씩 우선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담임교사가 연가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체교사 지원대상은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와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에게 우선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17: 402). 또한 대

체교사는 보수교육 참석, 결혼 등 연가, 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긴급보육 수요 발생 시 지원 가능하며,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별로 주중 1~5일 이내 또는 최대 2주로 지원일수의 다양화를 지향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I-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I-2-1〉 대체교사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비고
상시	1 (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사후 증빙자료 (영수증)
	2 (연가)	연가(결혼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사전 결혼증빙자료
긴급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최우선 사유	수시접수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 403.

나) 지원방식

대체교사 지원방식은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를 신청하되, 보수교육 사유,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유선·FAX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이렇게 신청된 대체교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해 확정되며, 확정된 사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대체교사를 파견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7: 403).

〈표 II-2-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운영지원 내용(201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운영지원의 목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센터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매뉴얼 개정 및 보급 •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의견교류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체교사관리자교육 진행 •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지원(사업 안내, 운영조사, 홍보, 대체교사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등) • 상시로 채용되는 대체교사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OJT 제작 및 지원 • 사업 운영의 어려움·개선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관리 매뉴얼 개정, 대체교사 관리자교육, 대체교사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사업 실적보고 등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73).

다) 지원 실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관리매뉴얼 제작·보급과 관리자 교육, 간담회, 결과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사업 관리매뉴얼 제작 이후, 매년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급하고, 대체교사 관리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대체교사 관리자 역할, 채용에서 퇴직까지 대체교사 모집·교육·관리, 어린이집 선별 및 대체교사 배치, 대체교사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간담회(사업정보 교류, 의견수렴 등)이다. 이를 통해 대체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체교사 관리자 교육과 간담회, 결과보고회 이외 2014년에는 사업 현황, 문제점 및 어려움을 듣고 사업의 개선사항을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 논의를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지방센터 사업 담당자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74).

2016년에는 사업의 활성화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운영의 어려움 및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을 연 4회 진행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74).

〈표 II-2-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운영지원 현황(2012-2016)

단위: 부, 회,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 관리매뉴얼	100	200	150
교육	2	2	1
참석 인원	51	152	47
운영 지원	사업안내, 운영조사, 시스템 모니터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	사업안내, 운영조사, 시스템 모니터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 홍보리플릿(45,000부), 특별교육 (1,124명 수료) 실시	사업안내, 운영조사, 시스템 모니터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 대체교사 OJT 제작, 사업 모니터링(4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p. 74.

2)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예산을 지원하여 각 관할 센터가 대체교사를 채용·관리·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사업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한 후 지자체에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여 받는 사업으로 나뉜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33).

국고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외에도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대체교사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센터는 시·도 센터 7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시·군·구 센터 51개소(서울지역 시·군·구, 인천 남구, 경기지역 시·군·구,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이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33).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자체 예산을 보조 받아 운영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서울과 경기 지역 센터 등에서 운영되는데, 지원대상·기간·사유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 지역은 대체교사 인력 지원과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 인력 지원사업은 반담임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에게 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기타 사유로 지원하며, 대체교사 신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온라인과 유선으로 가능하다.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은 센터에서 지원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사전확인증’을 어린이집에서 발급해주고 있으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대체교사를 월급형과 일당형으로 운영하며 수급에서 차이가 있다. 월급형은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여 어린이집 신청 시 지원하며 일당형은 어린이집에서 대체 교사를 직접 구인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구조이다. 일당형 운영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문의시 안내하거나 사업 문의 및 입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관할 지자체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 등으로 세부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센터에서는 대체교사 근로는 다양하게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월급제 이외에 부산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단시간(일 4시간)만 지원하는 ‘시간제 대체교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대체교사 인원은 보건복지부와 비례한 정도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풀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운영된다. 경기 지역 일부와 대전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대체교사에 대한 교육을 센터가 하고 기관을 연계해주는 보육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

양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33).

〈표 II-2-4〉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추진 현황(2016)

단위: 개소, 명

구분	운영센터		지원받은보육교사*
총계	58		16,558
서울	26	서울(시도 센터)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격년), 중랑구	4,465
부산	1	부산(시도 센터)	2,444
대구	1	대구	822
인천	1	인천 남구	175
광주	1	광주	376
대전	1	대전	1,628
울산	1	울산	391
경기	22	경기북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경기)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5,822
충북	1	청주시	243
전북	1	익산시	30
경북	1	포항시	121
경남	1	진주시	41

주: *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보육교직원의 연간 누계 실적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p. 134.

나.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되는데, 2014년 8월부터 종합형(가사 추가), 보육교사형(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다양화 하였다(여성가족부, 2017: 11). 이들 중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원내용 및 이용비용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은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된 돌보미는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과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7,800원(정부지원 3,900원, 부모부담 3,900원)이며, 정부지원 시간(연 48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시간당 3,250원 추가(정부지원 50%, 부모부담 50%, “원” 단위 금액 발생 시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 등 절하)된다.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의 질병 완치 시까지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50% 지원해준다.

한편 서비스 이용 시 자녀양육 정부지원 서비스 간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평일 9시~17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평일 9~13시),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기준’에 따라 36개월 이하의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맞춤형’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제한 시간을 9~15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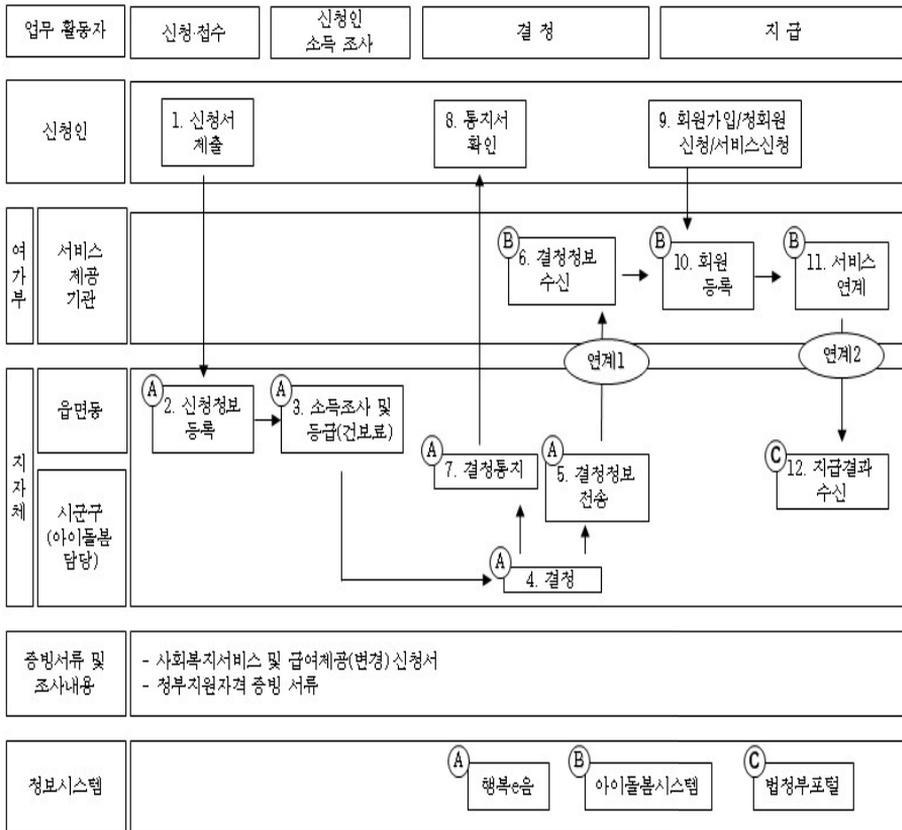
2)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가구의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는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7: 12).

특별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에게 우선 제공되며,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1부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를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home.go> 검색일자 2017년 8월 30).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절차는 [그림 II-2-2] 와 같다. 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을 위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정부 미지원 가구는 9번부터 진행된다(여성가족부, 201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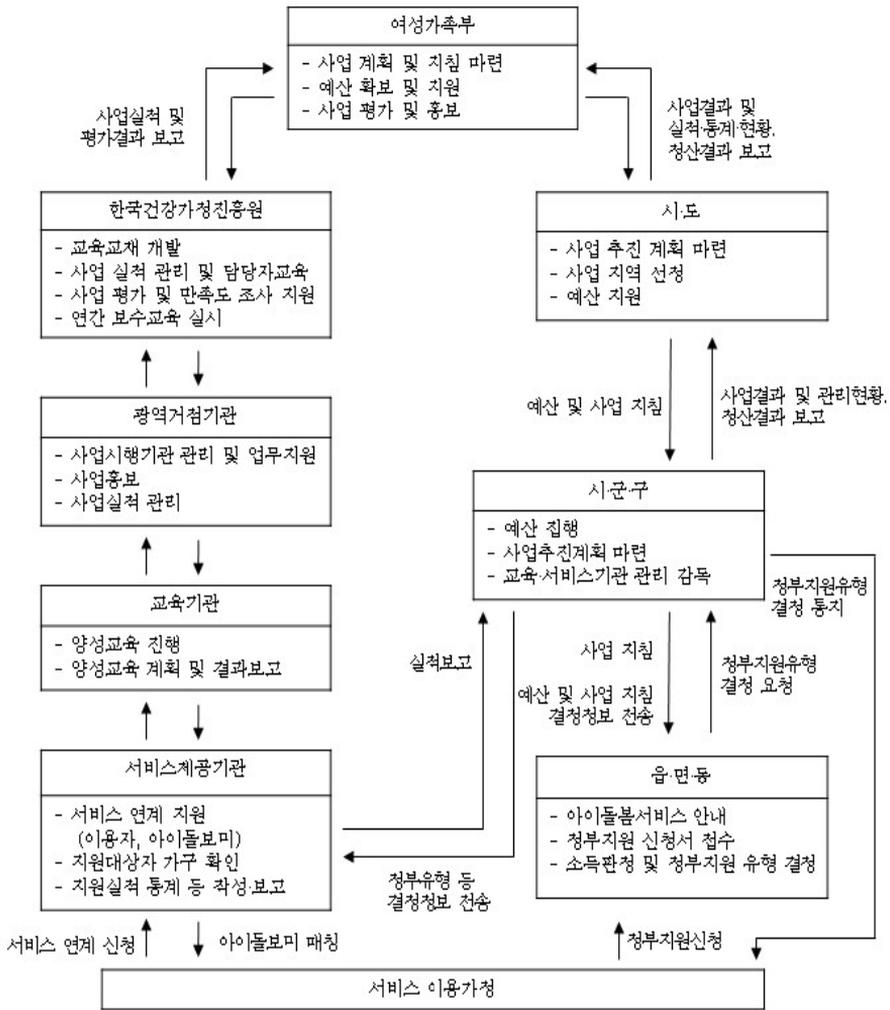
자료: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p. 19.

[그림 II-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도

3) 사업 추진체계

사업 전반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교육, 사업 실적 관리,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광역 거점 기관과 교육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순으로 상호 업무가 처리된다(여성가족부, 2017: 14).

각 주체별로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표 II-2-5> 와 같다.



자료: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p. 14.

[그림 II-2-3]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체계도(2017)

<표 II-2-5>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체계

추진주체	기능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감독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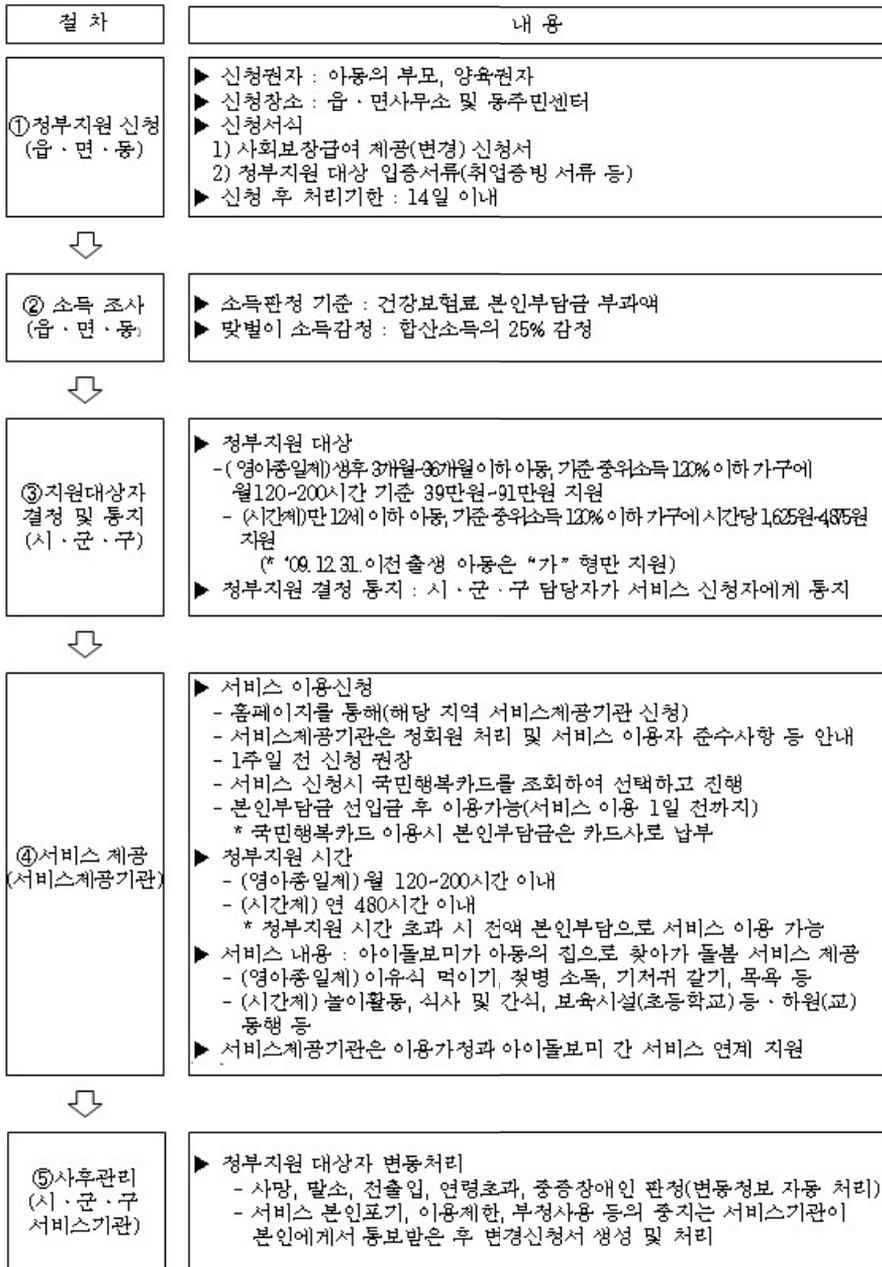
(표 II-2-5 계속)

추진주체		기 능
시·도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시·군·구에 예산 지원 및 사업량 조정 등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 사회 서비스 관련 예산·인원 보고
시·군·구	사업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 가정 양육지원 중복 여부 및 지원 연장 여부 등 결정(법·정부 시스템을 통하여 타 복지서비스 수급 여부 확인) - 사고 발생 관리·보고 - 서비스제공기관(재)지정·관리 감독(합동 점검) - 예산 집행 및 실적보고, 홍보 등 - 사업평가
읍·면·동	서비스 정부지원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안내, 신청·접수, 유형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가정)정부 미지원 유형의 경우 신청·접수 처리 - 아이돌보미 모집·등록 -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 - 사업 실적 보고
광역 거점기관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현장)평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아이돌봄 홍보, 돌보미 현황 파악 및 사업 실적 분석 -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한국건강 가정 진흥원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담당자 교육 -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 관리 - 현장지원 방문 컨설팅 - 연간 보수교육 운영 및 관리

자료: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p. 15.

4) 업무 흐름도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정부지원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부 미지원 가구는 이하 [그림 II-2-4] ④번부터 적용된다(여성가족부, 2017: 21).



자료: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p. 21.

[그림 II-2-4]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흐름도(2017)

다. 지방정부의 긴급보육 지원 현황

서울시, 경기 파주시, 강원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긴급보육 지원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무상보육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에 투입되는 재원을 증가하여 공보육을 정착시키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였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긴급 돌봄 수요를 위한 인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견 가능한 긴급 돌봄 인력이 성북구 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4).

이에 서울시는 기존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완을 위한 긴급·틈새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공보육의 정책 체감을 향상시키고자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망 구축 계획을 추진했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6).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이돌봄기동대 시범운영

우리 동네 아이돌봄기동대는 긴급 또는 일시적인 부모의 사정으로 돌봄 인력이 가정 또는 부모가 원하는 장소로 파견을 나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다(서울특별시, 2017: 108). 이 서비스는 2016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이돌봄기동대 인건비 및 사업비로 135,800천원(참여자 기본급 월 20만원, 교육비, 참여자 모집 홍보비 등)을 책정했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14).

동 사업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07시~20시, 시범지역은 영등포·서대문, 강북·성북·성동·광진의 3개 권역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용대상은 6개월~9세(초2)의 자녀를 둔 부모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시간당 7천원부터로 등하원 동행, 긴급·일시 단기 돌봄, 부모 모임 시 임시 돌봄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7).

아이돌봄기동대 서비스는 단순히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틈새 보육서비스를 지역내 어르신들이 제공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한 보육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의 노후와 젊은 세대의 육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었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3).⁵⁾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어르신의 수익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사업(시간당 6,500원)보다는 높고 시장가격(기본 4시간 3만5천원~4만원)보다는 낮은 7천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었고, 서비스 제공 인력 역시 '어르신 일자리(시장형) 사업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한 것이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7).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참여 인원은 3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20명 내외를 선정하여 7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참가능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7). 근무조건은 기본급 월 20만원에 월 30시간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 이상 근무 시는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8).

〈표 II-2-6〉 서울시 우리 동네 아이돌봄기동대 근무 조건

구분	내용
근무시간	월 30시간(7시~21시)
기본급	월 20만원 + 수당 ※ 수당 : 월3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지급
특별지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64세까지/ 국민연금 60세 이상 가입불가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실(2016).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망 구축 계획. p. 8.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리 동네 아이돌봄기동대가 되기 위한 교육계획도 마련하였다. 직무기본교육(40시간), 직무심화교육(20시간), 소양교육(4시간), 보수교육(필요시) 등이 그것이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7). 구체적인 교육 기간과 교육시간, 교육내용은 아래 〈표 II-2-7〉 과 같다.

5) 어르신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이용료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사업(시간당 6,500원)보다는 높고 시장가격(기본 4시간 3만5천원~4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7).

〈표 11-2-7〉 서울시 우리 동네 아이돌봄기동대 근무 조건

구분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직무기본교육	8월	1일 4시간 (총 40시간)	돌봄서비스의 이해/ 신생아 돌보기 영유아 발달심리의 이해/ 연령별 발달특징과 돌봄방법/ 놀이지도/ 연령별 영양관리(이유식·간식)/ 세대별 양육방법과 창의성교육 이해 아동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돌봄교사의 역할과 자세
직무심화교육	9월	1일 4시간 (총 20시간)	아이들에게 흔한 질병, 증상별 간병방법, 아픈아이의 심리 및 행동 이해, 응급상황 대처 및 위험관리
소양교육	9월~12월	월 1회 (2시간)	활동소감 및 의견나누기/ 대화법 등 의사소통훈련
	10월~12월	주1회 (2시간)	자조모임 교육(노래교실, 건강교실 등)
보수교육	필요시	필요시	직무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실(2016).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망 구축 계획. p. 8.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2017)에 따르면, 이렇게 추진된 계획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성동,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강서, 영등포, 송파, 그 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서울특별시, 2017: 108).

나) 긴급보육 거점시설 시범 운영→긴급보육시설 시범운영

긴급보육 거점시설 시범운영은 아이돌봄기동대 사업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보육 거점시설을 지정, 시범운영하여 아이돌봄기동대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3개소, 365 열린어린이집: 3개소, 야간 시간제보육: 2개소)과 우리 동네 아이돌봄기동단 사업지역(성동, 성북, 강북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중 시간연장보육 별도교사가 있는 곳)을 시범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은 18시~22시, 이용대상은 미취학 아동, 이용료는 시간당 3천원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보육교사는 1명을 배치한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9-10).

긴급보육 거점시설 시범운영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긴급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는 인건비(보육교사 인건비 150%)와 시설운영비(월 20만원)를 지원한다(서울특별시, 2017: 27). 사업 명칭 또한 ‘긴급보육 거점시설 시범 운영’

에서 '긴급보육시설 시범 운영'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아이돌봄기동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녁시간대(18시~22시)에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틈새·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료화하였다. 서비스 대상도 미취학 아동에서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의 6개월~미취학아동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밖에도 보육정원(어린이집별 5명)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서울특별시, 2017: 107).

〈표 II-2-8〉 서울시 긴급보육 거점시설 시범운영 추진 계획

구분	세부 내용
이용시간	18시~22시 (18시 이전 이용 시 기관과 사전 협의) ※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대상	미취학 아동(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자 등) ※ 초등학교 저학년: 시범기간 수요 및 성과 분석 후 확대 여부 결정
이용료	시간당 3천원 (시간연장보육 이용료)
보육교사	1명 배치 *시간제(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1명, 운영비 월 20만원 지원 (※시비50%, 구비50%) 영유아 보육, 보육일지 작성, 기타 보육 업무(시설장 및 보육교사 협의)
기타사항	야간시간제보육 운영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따름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실(2016).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망 구축 계획. p. 10.

〈표 II-2-9〉 서울시 긴급보육시설 시범운영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이용시간	평일 18시~22시(보육수요에 따라 21:30까지 운영할 수 있음)
이용대상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의 6개월~미취학아동
이용료	시간당 3천원(식대별도: 1식/1,000원)
보육 정원	어린이집별 5명
보육교사 역할	영유아 보육, 보육일지 작성, 기타 보육 업무(시설장 및 보육교사 협의)

자료: 서울특별시(2017).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107 재구성.

다) 아이돌봄(긴급) 사업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당시 서울시에는 부모의 갑작스런 야근, 출장, 개인사정(아플 때, 갑작스런 용무 등)으로 긴급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한 인력이 성북구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긴급 아이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의 1개였던 서비스 지역을 성동, 영등포, 강동, 강서로 확대하여 5개로 늘리고, 긴급 아이돌보미를 10명 내외(자치구별 1~2명)로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 아이돌보미의 기본급을 30만원/30시간~60만원/60시간으로 설정하여 여건에 따라 자치구별로 책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시간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0시에서 24시로 규정하였다. 서비스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당 최소 1,625원에서 최대 6,50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자부담 비용에 차등을 두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시 24시간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당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12).

이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자치구에 존재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선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부모가 수행기관인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고, 연계가 확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선납부한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에게 긴급 돌보미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12). 그러나 이는 추진 계획만 수립되었을 뿐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2) 경기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2017년 5월 2일부터 부모들의 양육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긴급(당일) 아이돌봄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사전에 일정을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달리 당일 갑작스러운 부모의 야근, 출장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이용가능한 연령은 만 3개월~12세 아동으로 서비스 신청 전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및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긴급 사유발생 당일 신청하면 월 3회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기본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원이다. 다만 이용금액의 경우 3,500원의 정부지원이 가능해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부담금 최대 6,500원으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파주시 보도자료, 2017. 04. 26)⁶⁾.

긴급 아이돌보미 배치 인원은 1권역(운정, 교하, 조리)과 2권역(금촌, 문산, 파주, 적성, 법원, 파평, 광탄, 율통, 탄현)에 각각 1명씩 총 2명으로 정해졌다. 또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차량소지자를 우대하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

6) 파주시 보도자료(2017.04.26). 파주시, 긴급(당일)아이돌봄서비스 시행(검색일자: 2017. 10. 25).

호한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결격사유로는 다음과 같다(파주시, 2017)7).

〈표 11-2-10〉 경기 파주시 긴급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경기 파주시 긴급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료: 파주시(2017). 2017년 긴급(당일)돌보미 모집 안내.

긴급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당일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활동을 비롯하여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으로 수당은 기본 30만원/30시간(최소 활동시간)이며, 최소 활동시간 이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 돌봄 수당을 적용하고자 하였다(파주시, 2017).

3)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역시 2017년 7월부터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긴급아동보호서비스인 “원더마마 서비스”를 시행했다. 원더마마 서비스는 직장맘의 근본적인 고충해결과 육아 종합지원으로 행복한 직장여성의 환경조성을 위한 포항시의 정책 중 하나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포항시 직장맘, 직장대디 또는 일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시간당 5천원, 기본 2시간, 1일 4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내용은 아이병원픽업서비스,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귀가, 아이들 하교길 동행, 혼자 있는 아이 SOS요청 등으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이용신청을 하면 직장가입여부 확인을 거쳐 원더마마 서비스의 파견·

7) 파주시(2017.03.10). 2017년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문_신청서 포함(검색일자: 2017. 11. 16).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경북일보, 2017)⁸⁾.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원더마마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포항지회, 포항시 어린이집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직장맘 지원을 위한 협력병원 협약도 체결했다(포항시 정책기획관, 2017: 75). 이에 포항시는 '원더마마 서비스' 홍보물을 제작해 병원에 비치하고, 병원들은 아동환자의 이송과 보호자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협조해 서비스 정착에 힘쓰고자 하였다. 또한 원더마마 서비스를 바탕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고, 직장맘의 권리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자 하였다(매일신문, 2017)⁹⁾.

3. 일본의 환아보육 지원제도

일본의 자녀가 아픈 경우 보육지원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맞벌이 가정 보육지원 일반 및 해당 서비스 기관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맞벌이 가정 대상 기관보육 지원 일반

일본의 맞벌이 가정 대상 보육지원으로 최근 주목할 바는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에 의해 0세아의 어린이집 입소를 허용한 점이며, 이하와 같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¹⁰⁾.

유치원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보육소

취업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육이 곤란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0~5세까지의

8) 경북일보(2017.07.04). 포항시 바쁜 엄마·아빠 안심 '원더마마' 출동 (검색일자: 2017. 10. 25).

9) 매일신문(2017.08.09). 포항시 '원더마마 서비스' 협력병원 협약 (검색일자: 2017. 10. 25).

10) 일본 정부 홍보 홈페이지.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며 이용시간은 저녁까지 보육하며 어린이집에 의해 연장보육도 실시한다. 이용이 가능한 보호자는 맞벌이 세대, 친족의 간병 등의 사정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보호자다.

□ 인정어린이원

이용 가능한 보호자는 맞벌이 세대, 친족의 간병 등의 사정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보호자다. 0~2세 아동은 저녁까지 보육하고 필요시 연장보육도 실시한다.

□ 지역형 보육

이용시간은 저녁까지의 보육이며, 필요시는 연장보육이 가능하다. 이용이 가능한 보호자는 맞벌이 세대, 친족의 간병 등의 사정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보호자다. 지역형 보육에서는 보육활동 지원이나 기관 졸업 후에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연계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인정어린이원)을 필수적으로 지정해야한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

세부 유형으로는 1) 가정보육, 2) 소규모 보육 3) 직장내 보육 4) 자택방문형 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

가정보육(보육마마)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인수(정원 5인 이하)를 대상으로 세심한 보육을 실시한다. 소규모보육은 정원이 6~9인으로 가정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세심한 보육이 이루어진다. 직장내 보육은 회사 사업소내 보육시설 등에서 직원의 자녀와 지역의 아동을 같이 보육한다. 자택 방문형 보육은 장애, 질환 등으로 개별보육이 필요하거나 보육시설이 폐원된 지역에서 등에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의 자택에서 일대일 보육을 실시한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검색일자 2017. 11. 19).

나. 환아보육 지원제도

환아보육은 발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바이러스 감염증이 많음)에 따라 일반 보육소·유치원·학교 등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이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일과 중 보육하는 제도이다. 이들 서비스는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의뢰할지의 여부 판단을 해야 하는 등 고도의 관찰력, 대응력이 요구되므로 그 담당인력은 건강한 아이를 맡기는 베이비시터와

는 구분된다(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hoikur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¹¹⁾. 또한 환아보육은 아이의 건강회복과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의 간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며 부모가 자신의 육아에 자신을 갖고 자신의 건강생활을 기획 운영하는 것에 기여하는 등의 이유로 ‘최고의 육아지원’으로 인식된다.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에서 발간된 ‘환아보육 매뉴얼’에 의하면, ‘환아보육’은 ‘질병에 걸린 아동에 대해서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교육적, 논리적, 종교적인 발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가 집단(보육사, 간호사, 영양사 등)에 의해 보육과 간호를 하며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돌보는 것’으로 정의된다(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hoikur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

1) 환아보육 지원제도의 추진 경과 및 연혁

환아보육 사업은 국가 시책으로는 환아 데이케어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되어 병후(病後) 아동 데이케어 모델사업을 거쳐 1995년도부터 시정촌(市町村) 보조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지원 일일서비스 사업’, 그리고 이듬해 사업명을 다시 변경하여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육 사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환아보육 사업의 명칭은 국가에 의해 제도의 변천과 함께 변화하였다. 후생노동성이 발행하는 보육소 보육지침에 의해 2000년도부터 환아보육이 정식으로 정의되었고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는 노력으로 국가도 환아보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건강 21 플랜(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1.mhlw.go.jp>, 검색일자 2017. 11. 19)¹²⁾을 통해 공적 보조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s://ja.wikipedia.org/wiki/>, 검색일자 2017. 11. 19)¹³⁾.

당초 국가 시책에 의한 ‘병후 아동 데이케어’는 어린이집에 통원하는 질병회복기에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에서의 집단생활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육아와 취업의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 후 ‘영유아 건강지원 1일 서비스’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육사업’으로 변천했는데 이 명칭의

11)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환아보육 매뉴얼, (검색일자: 2017. 11. 19).

12)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건강일본21’, http://www1.mhlw.go.jp/topics/kenko21_11/top.html, (검색일자: 2017. 11. 19).

13) 위키백과 홈페이지. ‘病兒保育’ 항목, <https://ja.wikipedia.org/wiki/%E7%97%85%E5%85%90%E4%BF%9D%E8%82%B2>, (검색일자: 2017. 11. 19).

변경은 기본적으로는 ‘병후 아동 데이케어’와 같은 뜻인데 어린이집에 통원하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재택 영유아가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 “영유아 건강지원”이라는 명칭도 이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일반 사단법인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¹⁴⁾.

2) 환아보육 서비스 유형

환아보육 지원의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시설에서 보육하는 ‘시설형’과 자택에서 보육하는 ‘방문형’으로 분류된다. 시설형은 부모가 아픈 아이를 시설에 데리고 가서 환아 보육 시설에서 맡기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환경은 다르지만 다른 아이들과 교류할 수도 있다. 방문형은 보육자가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서 환아 보육 돌봄을 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평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보육을 받을 수 있다(일반 사단법인 전국 환아 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¹⁵⁾. 또한 환아보육은 민간의 소규모 보육실 등과 같은 곳부터 병원 내에 마련된 환아 보육 전문기관과 같은 곳까지 다양하다. 즉 환아보육에 대한 선택지는 ①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환아보육실, ② 병원이나 의사회가 운영하는 환아보육실, ③ NPO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운영하는 환아보육, ④ 베이비시터나 민간기업의 일시보육, 환아보육 등으로 다양하다(NPO법인 플로렌스 홈페이지, 검색일: 2017. 11. 19)¹⁶⁾. 이는 부모나 아동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자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여진다.

육아와 취업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회복기에 있는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 부설된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맡는 “영유아건강지원 일시보육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¹⁷⁾. 이 사업은 신엔젤플랜에서 2004년도까지 500개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

14) 일반 사단법인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

15) 일반 사단법인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7. 11. 19).

16) NPO법인 플로렌스 홈페이지 <http://byoujihoiku.florence.or.jp/> 등을 참고로 작성 (검색일자: 2017. 11. 19).

17)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환아보육 사업의 현황과 과제’ http://www8.cao.go.jp/kisei-kaikaku/minutes/wg/2007/1001/item_071001_02.pdf, (검색일자: 2017. 11. 19).

시한 바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500시정촌에서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방공공단체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3) 담당 인력 및 자격요건

환아보육을 담당하는 인력은 흔히 ‘환아 보육사’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국가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환아보육을 제공하는 이들을 총칭한다. 현재 환아보육관련 자격으로는 2013년부터 일반사단법인 전국 환아보육 협의회(주로 시설형 단체가 회원)가 인증한 ‘환아보육 전문사’와, 일반사단법인 일본 환아보육 협회가 인증한 ‘인정 환아보육 스페셜리스트’가 있다(위키백과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¹⁸⁾. ‘환아보육 전문사’의 응시 자격은 보육사 또는 간호사이며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육한 자이다. 즉 보육 혹은 간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환아보육’이라는 전문 영역으로 진출하여 획득한 자격이다. 반면 ‘인정 환아보육 스페셜 리스트’는 특정 자격이나 실무 경험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위키백과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 또한 총 13회 인터넷 강의를 최단 1개월 동안 수강하면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그 후 1차 시험, 24시간 실습, 인정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환아보육은 아니지만 유사한 자격으로는 주로 입원 중인 병아를 돌보는 1인 의료 보육사(후생노동성 인정 국가자격), 의료 보육전문사(일본 의료보육학회 인정) 등이 있다(위키백과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

4) 세부사업 내용

이하의 환아보육 지원은 시정촌(특별구 포함, 시정촌이 인정한 자에게 위탁도 가능)에서 제공하며, 관련 예산은 국가 1/3, 도도부현 1/3, 시정촌 1/3로 분담한다(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¹⁹⁾.

가) 환아 대응형, 병후 아동 대응형

18) 위키백과 홈페이지. ‘病児保育’ 항목 <https://ja.wikipedia.org/wiki/%E7%97%85%E5%85%90%E4%BF%9D%E8%82%B2>, (검색일자: 2017. 11. 19).

19)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환아보육 사업에 대해’(2013. 11. 25) http://www8.cao.go.jp/shoushi/s_hinseido/meeting/kodomo_kosodate/b_8/pdf/s2-2.pdf, (검색일자: 2017. 11. 19).

환아 대응형, 병후 아동 대응형지역의 환아·병후 아동에 대해 병원·어린이집 등에 부설된 전용 공간 등에서 간호사 등이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사업이다(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 검색일자 2017. 11. 19).

대상아동은 당장 증상의 급변은 없지만 질병 회복기 이전이기 때문에(병후 아동의 경우는 질병 회복기이며) 집단 보육이 곤란하고 또한 보호자의 근무 등의 사정으로 가정 보육이 곤란한 아동이며,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다.

간호사 등은 이용아동 약 10인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보육사는 이용 아동 약 3인당 보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병원·진료소, 어린이집 등에 부설된 전용공간 또는 본 사업을 위한 전용시설 등에서 운영된다.

2014년 기준으로 1,271곳(환아 대응형 698곳, 병후 아동 대응형 573곳)에 지원되었다.

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 대응형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 대응형은 보육 중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맡으며, 어린이집 입소 아동에 대한 보건적 대응이나 지역의 육아가정과 임산부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 검색일자 2017. 11. 19).

대상 아동은 사업 실시 어린이집에 통원하고 있으며, 보육 중에 미열이 나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으로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긴급대응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다.

간호사 등을 상시 1명 이상 배치(말게 되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의 인원은 간호사 1명당 2명 정도), 어린이집의 의무실, 여유공간 등에서 위생적으로 배려되고 있으며 대상아동의 안정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 등에서 실시한다.

2014년 기준으로 563곳에서 운영되었다.

다) 비시설형(방문형)

비시설형은 지역의 환아·병후 아동에 대해 간호사 등이 보호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실시되었다(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 검색일자 2017. 11. 19).

대상아동은 환아 및 병후 아동이며, 보육아동의 인원은 일정 연수를 수료한 간호사 등, 보육사, 가정적 보육자 중 1명당 1명 정도로 한다.

2014년 기준으로 5개소에서 운영되었다.

다. 지역별 환아보육 운영 사례

방문형 환아, 병후 아동 보육 이용요금 지원의 운영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니시노미야시 사례

니시노미야시에서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 등에서의 집단보육을 이용하지 못하고 취업 등의 사정으로 보호자에 의한 보육이 곤란한 경우에 이용한 베이비시터 파견에 의한 환아, 병후아 보육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한다(효고현 니시노미야 시 홈페이지 <http://www.nishi.or.jp> 검색일자 2017. 11. 19)²⁰⁾.

지원대상은 1) 니시노미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 3)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 전후 7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아동(의료명세서 제출 필요)이다(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홈페이지 <http://www.nishi.or.jp> 검색일자 2017. 11. 19).

지원수준은 베이비시터 파견에 의한 환아, 병후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요금(근무처 등의 복리후생 등의 지원을 받음 금액을 제외함)의 50%를 지원한다(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홈페이지 <http://www.nishi.or.jp>, 검색일자 2017. 11. 19).

이용기간은 서비스 이용 관련 1회 발권에 7일까지 적용되며, 상한액은 아동 1인당 연간 4만 엔이다. 단, 입회금, 등록요금, 연회비 및 기타 준하는 비용, 베이비시터 파견 교통비 및 식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홈페이지 <http://www.nishi.or.jp>, 검색일자 2017. 11. 19).

사업 주체는 공익재단법인 전국보육서비스협회 회원 사업자와 내각부 베이비시터 파견사업 할인권 담당 사업자이다(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홈페이지, <http://www.nishi.or.jp>, 검색일자 2017. 11. 19). 이용 절차는 <표 II-3-1> 과 같다.

20) 효고현 니시노미야 시 홈페이지. '방문형 환아, 병후 아동보육 이용료 지원 제도' <http://www.nishi.or.jp/media/2016/houmongata.pdf>, (검색일자: 2017. 11. 19).

〈표 II-3-1〉 니시노미야시의 환아보육 제도 이용 절차

- 신청 수속(신청자 본인)
 -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 후 익월 15일까지 니시노미야시청 보육유치원 지원과로 서류 제출
 - 지원금 교부신청서 겸 동의서
 - 지원금 교부청구서 겸 계좌 입금 의뢰서
 - 베이비시터 사업자 영수증 및 이용명세서 사본
 - 의료기관 검진 시의 진료명세서 사본
- 심사결과 통지(시청)

시에서 서류심사 결과 지원이 적당할 경우는 '결정통지서', 부적당할 경우는 '비해당통지서' 송부
- 지원금의 교부(시청)

지원이 결정된 경우는 시에서 지원금 교부청구서 겸 계좌이체 의뢰서로 지정 계좌에 지원금 입금

자료: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홈페이지. '방문형 환아, 병후 아동 보육 이용료 지원 제도' <http://www.nishi.or.jp/media/2016/houmongata.pdf> (검색일자: 2017. 11. 19).

2) 오키나와현 가데나초 사례

오키나와현 가데나초에서는 보호자의 육아와 취업의 양립지원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등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질병 회복기'여서 자택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오키나와현 가데나초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²¹⁾.

대상 아동은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으로 질병 회복기에 있으면서 의료기관에 의한 입원치료 필요는 없지만 안정 확보를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 보육이 곤란한 아동이며 보호자가 근무 형편상 질병, 사고, 출산,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이유로 가정 보육이 곤란한 아동,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아니지만 상기와 동일한 상황에 의해 가정 보육이 곤란한 아동(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포함)이다(오키나와현 가데나초 홈페이지 <http://www.town.kadonawa.jp> 검색일자 2017. 11. 19).

21) 오키나와현 가데나초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육 사업에 대해' <http://www.town.kadonawa.jp/life/kur135.html>, (검색일자: 2017. 11. 19).

또한 적용대상 아동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표 II-3-2>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3-2> 오키나와현 가테나초의 환아보육 적용대상 증상

- 의료기관에 의한 입원, 치료 필요는 없지만 안정 확보를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지 못하는 상태
- 일상적인 질환(감기, 소화불량 등)
- 전염성 질환(홍역, 수두, 풍진 등)
- 만성질환(천식 등)
- 외상성 질환(열상 등)

자료: 오키나와현 가테나초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육 사업에 대해' <http://www.town.kadena.okinawa.jp/life/kur135.html> (검색일자: 2017. 11. 19).

서비스 기관은 비야쿠 산부인과 소아과이며, 이용요금 1일 1,500엔(식사 포함)이고 진찰료, 치료비, 약값은 별도이다. 생활보호 세대 및 모자, 부자, 장애아 가정으로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 가정과에 이용요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은 자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이용요금 1,500엔이 면제된다(오키나와현 가테나초 홈페이지, <http://www.town.kadena.okinawa.jp> 검색일자 2017. 11. 19).

이용 절차는 사전에 영유아건강지원 일시보육사업 이용신청서를 아동가정과에 제출하고 이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해당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오키나와현 가테나초 홈페이지 <http://www.town.kadena.okinawa.jp>, 검색일자 2017. 11. 19).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동안이며 연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는 7일 이상도 가능하다(오키나와현 가테나초 홈페이지 <http://www.town.kadena.okinawa.jp>, 검색일자 2017. 11. 19).

라. 시사점

이상의 일본 사례를 통해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지원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아보육의 방향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일하

는 부모들의 자녀가 아픈 경우에도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아픈 아동의 보육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아동이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갈 경우에도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되, 증상이 악화될 경우는 의사의 진찰을 의뢰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등이 포함된다.

둘째, 환아보육의 대상아동 및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상 아동 증상으로는 의료기관에 의한 치료나 입원은 불필요하나, 안정 확보를 배려하여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의 아동이다.

셋째, 서비스 유형은 시설형과 자택형 등으로 다양화하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 주체별로는 1) 어린이집에 별도 공간 마련, 2) 병원이나 의사회가 운영하는 환아보육실, 3) NPO에서 운영하는 환아보육, 4) 베이비시터나 민간기업의 일시 보육이 그것이다.

넷째, 돌봄인력 자격은 이원화 되어있다. 돌봄인력의 응시자격으로 보육사 또는 간호사이며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적용하는 경우와, 자격증 없이 총 13회 이상의 인터넷 강의를 이수한 후 1차, 24시간 실습, 인정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즉 간호사 등 기존 관련 자격증 소유자를 적극 활용하거나 별도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받은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추구될 수 있다.

다섯째, 재원 분담은 국가(국고), 광역 단위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섯째, 운영 절차는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정 기간내(익월 15일까지)에 시정촌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지급이 타당한 상황인지를 진단한 후 사후 지급된다. 또한 이때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의 경우는 해당 비용을 면제하는 조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Ⅲ.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전국지역의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보육 실태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때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자녀가 아픈 경우의 보육지원 요구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1. 어린이집 이용 및 긴급보육 실태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긴급보육 양상 및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하였다.

가. 어린이집 이용 실태

1) 서비스 이용시간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을 조사하고 해당 시각이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활용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Ⅲ-1-1〉 어린이집 등원 시각

구분	단위: %(명)					계(수)
	8시 이전	8시~9시 이전	9시~10시 이전	10시~11시 이전	11시 이후	
전체	3.0	36.6	52.0	8.2	0.2	100.0(1,000)
자녀연령1						
0세	2.3	38.6	52.3	4.5	2.3	100.0(44)
1세	2.5	37.6	52.2	7.6	0.0	100.0(157)
2세	2.8	35.9	52.3	8.9	0.0	100.0(281)
3세	4.6	30.5	54.8	9.7	0.4	100.0(259)
4세	1.8	39.2	52.4	6.6	0.0	100.0(166)
5세	2.2	48.4	41.9	7.5	0.0	100.0(93)

(표 III-1-1 계속)

구분	8시 이전	8시~9시 이전	9시~10시 이전	10시~11시 이전	11시 이후	계(수)
자녀연령2						
영아	2.7	36.7	52.3	8.1	0.2	100.0(482)
유아	3.3	36.5	51.7	8.3	0.2	100.0(518)
추가 돌봄 여부						
병행	4.3	35.2	51.2	9.3	0.0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2.7	36.9	52.1	8.0	0.2	100.0(83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3	39.1	43.5	13.0	0.0	100.0(23)
400만원 이하	3.1	33.2	53.6	10.0	0.0	100.0(319)
600만원 이하	3.0	39.7	50.5	6.3	0.4	100.0(463)
600만원 초과	2.6	34.4	53.8	9.2	0.0	100.0(195)
거주지역						
광역시	4.3	33.2	52.3	10.1	0.3	100.0(398)
중소도시	2.2	37.5	53.1	7.1	0.2	100.0(539)
읍면지역	1.6	50.8	41.3	6.3	0.0	100.0(63)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1-2〉 어린이집 하원 시각

구분	15시 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이후	계(수)
전체	5.0	12.3	31.3	24.4	27.0	100.0(1,000)
자녀연령1						
0세	4.5	15.9	18.2	34.1	27.3	100.0(44)
1세	12.1	12.1	26.8	24.2	24.8	100.0(157)
2세	3.6	17.1	30.2	22.8	26.3	100.0(281)
3세	3.9	9.7	34.0	23.9	28.6	100.0(259)
4세	3.6	9.6	33.7	23.5	29.5	100.0(166)
5세	3.2	8.6	36.6	28.0	23.7	100.0(93)
자녀연령2						
영아	6.4	15.4	28.0	24.3	25.9	100.0(482)
유아	3.7	9.5	34.4	24.5	28.0	100.0(518)
추가 돌봄 여부						
병행	8.6	16.7	33.3	23.5	17.9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4.3	11.5	30.9	24.6	28.8	100.0(83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17.4	39.1	30.4	13.0	100.0(23)
400만원 이하	6.0	11.3	33.9	24.8	24.1	100.0(319)
600만원 이하	2.8	11.9	30.9	25.5	28.9	100.0(463)
600만원 초과	9.2	14.4	27.2	20.5	28.7	100.0(195)

단위: %(명)

(표 III-1-2 계속)

구분	15시 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이후	계(수)
거주지역						
광역시	6.3	13.1	32.4	22.4	25.9	100.0(398)
중소도시	4.6	11.9	30.8	26.5	26.2	100.0(539)
읍면지역	0.0	11.1	28.6	19.0	41.3	100.0(63)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우선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등원 시각은 9시부터 10시 이전이 5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8시부터 9시 이전이 36.6%로 나타났다(표 III-1-1 참조). 하원 시각은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이전이 3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오후 6시 이후가 27.0%,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이전이 24.4%로 조사되었다(표 III-1-2 참조). 등원 시각의 경우는 기관병행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하원 시각은 기관과 병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은 기관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가정에 비해 오후 3시 이전 8.6%, 오후 3시부터 4시 이전이 16.7%, 오후 4시부터 5시 이전 33.3%로 더 일찍 하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기관 이용시간이 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57.3% 였고, 반대로 부족하다는 응답율은 37.8%로 조사되었다(표 III-1-3 참조). 현재 어린이집 총 이용시간이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를 둔 가구에서 40.7%로 유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보육 필요시간 충족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더 이용하고 있다	
전체	57.3	37.8	4.9	100.0(1,000)
자녀연령1				
0세	54.5	40.9	4.5	100.0(44)
1세	57.3	40.8	1.9	100.0(157)
2세	55.9	40.6	3.6	100.0(281)
3세	59.1	34.4	6.6	100.0(259)
4세	59.6	34.3	6.0	100.0(166)
5세	53.8	38.7	7.5	100.0(93)
$\chi^2(df)$		10.173(10)		

(표 III-1-3 계속)

구분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더 이용하고 있다	계(수)
자녀연령2				
영아	56.2	40.7	3.1	100.0(482)
유아	58.3	35.1	6.6	100.0(518)
$\chi^2(df)$	8.278(2)*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6.5	30.4	13.0	100.0(23)
400만원 이하	58.9	37.0	4.1	100.0(319)
600만원 이하	55.7	39.5	4.8	100.0(463)
600만원 초과	58.5	35.9	5.6	100.0(195)
$\chi^2(df)$	5.129(6)			
거주지역				
광역시	54.0	41.5	4.5	100.0(398)
중소도시	59.4	36.0	4.6	100.0(539)
읍면지역	60.3	30.2	9.5	100.0(63)
$\chi^2(df)$	7.037(4)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구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한편 어린이집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 대상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종일제 운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로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일찍 하원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담자 3).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 보육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으로부터 시간연장형 보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하려는 아동이 없다고 전달받아,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하였다(면담자 3).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 질문하자) 분위기가 4시에 하원을 하는 분위기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데리러 오거나 제 친구도 같이 어린이집 같은 반에 있는데, 개도 할머니가 데리러 가고, 할머니가 안 오시면 이모도 데리러 오고하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물어봤어요. 보통 하원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원래는 늦게까지 하지만 보통 4시에 데리러 가요.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하시니까. (면담자 3)

(기관에서 시간연장을 하는 원인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늦게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저도 친정 엄마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친정 엄마 도움을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 주변에도 늦게까지 야간까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선택이 없으니

까. 개는 선생님하고 혼자 있는데요. (면담자 3)

제가 느끼기에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부모님께 도움을 뺄 수 없으니까,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도 바쁘시고 하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조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5시에는 거의 많이 데려가더라고요.(면담자 4)

2) 서비스 병행 이용 여부 및 비용 부담 정도

가) 서비스 병행 이용 실태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이외에 추가로 이용 중인 기관 또는 돌봄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로 나타난다(표 III-1-4 참조). 해당 비율은 읍면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검정이 불가피하나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어린이집과 병행 이용 중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조부모가 64.2%, 민간베이비시터와 아이돌봄서비스가 각각 26.5%, 21.6%로 나타난다. 또한 유아의 경우는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15.4%로 높게 나타나며, 민간베이비시터의 경우는 영아가 유아보다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표 III-1-5 참조).

〈표 III-1-4〉 기관 이외 서비스 병행 이용 여부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계(수)
전체	42.9	57.1	100.0(378)
자녀연령1			
0세	22.2	77.8	100.0(18)
1세	46.9	53.1	100.0(64)
2세	43.9	56.1	100.0(114)
3세	46.1	53.9	100.0(89)
4세	38.6	61.4	100.0(57)
5세	41.7	58.3	100.0(36)
$\chi^2(df)$	4.416(5)		
자녀연령2			
영아	42.9	57.1	100.0(196)
유아	52.2	47.8	100.0(182)
$\chi^2(df)$	0.000(1)		

(표 III-14 계속)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4.3	85.7	100.0(7)
400만원 이하	33.9	66.1	100.0(118)
600만원 이하	42.6	57.4	100.0(183)
600만원 초과	61.4	38.6	100.0(70)
$\chi^2(df)$	na		
거주지역			
광역시	49.7	50.3	100.0(165)
중소도시	36.1	63.9	100.0(194)
읍면지역	52.6	47.4	100.0(19)
$\chi^2(df)$	7.529(2)*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1-5〉 어린이집 이외 병행서비스 내용

구분	단위: %(명)					
	조부모	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학원	기타	계(수)
전체	64.2	26.5	21.6	8.0	1.2	100.0(162)
자녀연령1						
0세	100.0	50.0	25.0	0.0	0.0	100.0(4)
1세	70.0	33.3	10.0	0.0	0.0	100.0(30)
2세	56.0	32.0	28.0	2.0	0.0	100.0(50)
3세	73.2	22.0	22.0	9.8	2.4	100.0(41)
4세	63.6	18.2	27.3	9.1	0.0	100.0(22)
5세	46.7	13.3	13.3	40.0	6.7	100.0(15)
자녀연령2						
영아	63.1	33.3	21.4	1.2	0.0	100.0(84)
유아	65.4	19.2	21.8	15.4	2.6	100.0(7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	0.0	0.0	0.0	0.0	100.0(1)
400만원 이하	67.5	22.5	12.5	15.0	2.5	100.0(40)
600만원 이하	59.0	30.8	21.8	6.4	1.3	100.0(78)
600만원 초과	69.8	23.3	30.2	4.7	0.0	100.0(43)
거주지역						
광역시	61.0	28.0	24.4	8.5	0.0	100.0(82)
중소도시	64.3	28.6	20.0	7.1	2.9	100.0(70)
읍면지역	90.0	0.0	10.0	10.0	0.0	100.0(10)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맞벌이 가정 대상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조부모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면, 경력단절이 불가피하였다고 언급된다. 면담자 4는 야근이 일상화된 과거 직장에서 남편조차 귀가가 늦을 경우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배우자의 도움은 받는지에 대한 질문) 남편은 등원, 하원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 쪽이라 야근이 엄청 많은 직장이라... 심지어 연휴 때도 나간 적도 있고...(면담자 4)

(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자) 저희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일을 하시던 분은 아닌데 다른 종교 때문에 봉사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딸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지금 저희 아이를 위해서 시간 되면 데리러 갔다가...(면담자 3)

나) 서비스 병행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

어린이집과 병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과 부담정도를 질문하였다. 월 평균 이용비용은 기타를 제외하면 민간베이비시터가 640,000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였다. 해당 비용의 부담 정도는 기타를 제외하면, 학원이 평균 3.92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고,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30.8%로 조사되었다.

〈표 III-1-6〉 월 평균비용/이용부담 정도

단위: 원, %, 점(명)

구분	월 평균 비용 (원)	이용부담 정도					계(수)	평균 (5점)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 됨		
조부모	564,000	6.7	17.3	30.8	38.5	6.7	100.0(104)	3.21
민간베이비시터	640,000	2.3	-	27.9	51.2	18.6	100.0(43)	3.84
아이돌봄서비스	273,000	-	8.6	22.9	54.3	14.3	100.0(35)	3.74
학원	272,000	-	7.7	23.1	38.5	30.8	100.0(13)	3.92
기타	400,000	-	-	-	50.0	50.0	100.0(2)	4.50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이용부담 정도는 '전혀 부담되지 않음' 1점~'매우 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 긴급보육 실태 및 대응

1) 긴급보육 발생 여부 및 빈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나,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9%에 달하였다. 0세아를 둔 가구의 해당 비율은 93.2%로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서비스 병행 이용 가구에서 89.5%로 어린이집 단독 이용 가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7〉 긴급보육 어려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8.9	21.1	100.0(1,000)
자녀연령1			
0세	93.2	6.8	100.0(44)
1세	80.9	19.1	100.0(157)
2세	78.6	21.4	100.0(281)
3세	81.9	18.1	100.0(259)
4세	74.7	25.3	100.0(166)
5세	68.8	31.2	100.0(93)
$\chi^2(df)$	14.572(5)*		
자녀연령2			
영아	80.7	19.3	100.0(482)
유아	77.2	22.8	100.0(518)
$\chi^2(df)$	1.822(1)		
추가 돌봄 여부			
병행	89.5	10.5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76.8	23.2	100.0(838)
$\chi^2(df)$	0.980(1)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1-8〉 긴급보육 발생 빈도

						단위: %(명)
구분	아주 가끔	가끔 발생함:	보통:	자주	매우 자주	계(수)
	발생함	2달에 1회	한 달에	발생함:	발생함:	
	(연중 3회 이하	이하	1회 정도	한 달에	1주일에	
				2회 이상	1회 이상	
전체	20.3	35.0	28.5	13.8	2.4	100.0(789)

(표 III-1-8 계속)

구분	아주 가끔 발생함 (연중 3회 이하)	가끔 발생함: 2달에 1회 이하	보통: 한 달에 1회 정도	자주 발생함: 한 달에 2회 이상	매우 자주 발생함: 1주일에 1회 이상	계(수)
자녀연령1						
0세	7.3	34.1	31.7	26.8	0.0	100.0(41)
1세	16.5	39.4	28.3	11.8	3.9	100.0(127)
2세	21.7	35.7	28.1	12.7	1.8	100.0(221)
3세	18.9	36.3	30.7	11.8	2.4	100.0(212)
4세	21.0	31.5	27.4	16.1	4.0	100.0(124)
5세	34.4	26.6	23.4	15.6	0.0	100.0(64)
자녀연령2						
영아	18.5	36.8	28.5	13.9	2.3	100.0(389)
유아	22.0	33.3	28.5	13.8	2.5	100.0(4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7.8	27.8	27.8	11.1	5.6	100.0(18)
400만원 이하	21.6	34.5	27.3	14.8	1.9	100.0(264)
600만원 이하	20.4	35.8	27.5	14.3	1.9	100.0(363)
600만원 초과	16.7	34.7	33.3	11.1	4.2	100.0(144)
거주지역						
광역시	14.5	40.8	27.7	14.5	2.6	100.0(311)
중소도시	23.2	30.8	30.8	12.9	2.3	100.0(426)
읍면지역	30.8	34.6	15.4	17.3	1.9	100.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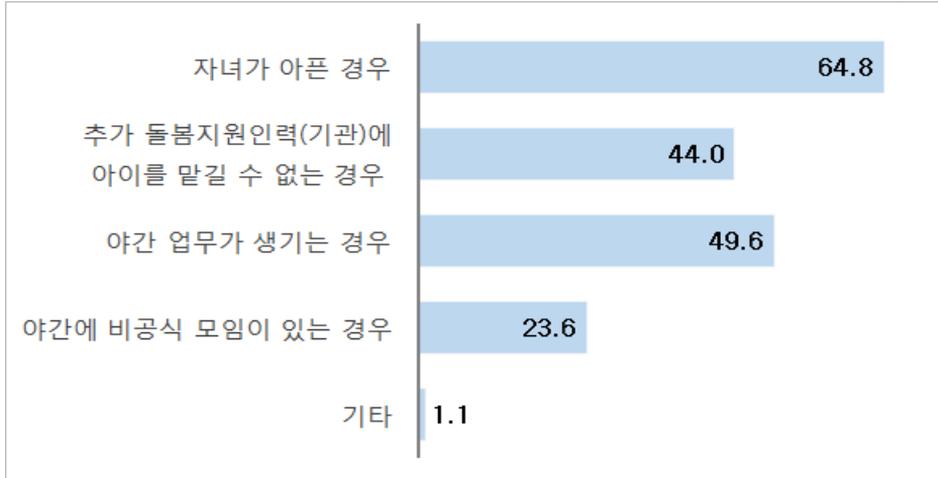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긴급보육 발생 빈도는 가끔 발생하는 경우(2달에 1회 이하)가 35.0%, 한 달에 1번 28.5%, 아주 가끔 발생하는 경우(연중 3회 이하)가 20.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8 참조).

2) 긴급보육 실태 및 대응

어린이집을 이용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야간 업무가 생기는 경우 49.6%, 추가돌봄 지원이나 돌봄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경우 44.0% 순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II-1-1] 긴급보육 경험 상황(중복응답)

보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 심층면담에서는 어린이집과 병행하여 이용 중인 병행 서비스 인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테면 면담자 3은 어린이집 이용과 더불어 친정어머니가 돌봄지원 인력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해당 조부모가 아픈 경우 등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야근이나 회식 등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최대 7시반까지 보육을 요청한 적이 있으며, 더 이상은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긴급보육 상황이 자주 초래되는 직장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지원체계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맡길 곳이 없어서 난감했던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저희 친정 엄마도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못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친정 엄마가 데리러 오지만, 따로 베이비시터를 쓰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은 베이비시터가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친정 엄마가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아무리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연세가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불효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만약에 긴급지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가 아파서 원에 못 보냈을 때, 하루 종일 친정 엄마가 보고 계실 때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상황 인거죠. (면담자 3)

(긴급보육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자) 한 번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셨어요.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럴 때 제가 하루 쉬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엄마가 아프신데 그것(보육)을 해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빨리 와서 애기를 데리고 와서 그랬던 적은 있어요.(면담자 3)

(야근이 갑자기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경우에는 기관에 전화를 해서...7시 30분까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때 한번, 일 년에 그런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면담자 4)

(직장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야간에 모임이 있다거나 회식이 생긴 적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제가 그런 게 있다면 다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일하다가 큰 아이가 여기에 방과 후 교실에 있을 때는 점심시간에 매일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 데리고 와서 저 퇴근할 때 같이 갔어요(면담자 4)

다음으로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연간 횟수를 질문한 결과, 평균 5.52회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48.1%로 조사되었다. 해당 횟수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0세아는 평균 7.8회, 1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높고, 영아의 평균 횟수는 5.84회로 유아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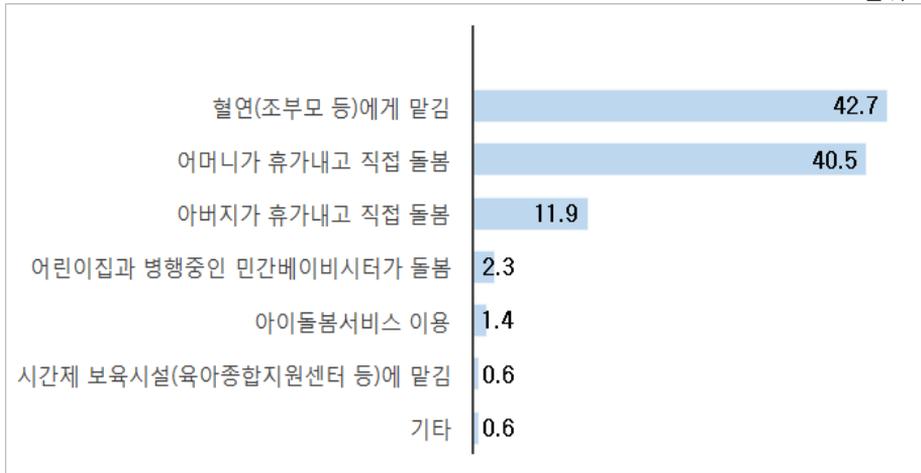
〈표 III-1-9〉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 등원하지 못한 연간 횟수(중복응답)

단위: 회수, (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10회	11회이상	평균	(수)
전체	11.7	16.0	17.4	6.7	19.2	20.7	8.2	5.52	(511)
자녀연령1									
0세	7.4	14.8	11.1	0.0	18.5	33.3	14.8	7.78	(27)
1세	14.0	17.2	23.7	1.1	18.3	17.2	8.6	5.60	(93)
2세	10.9	16.1	16.1	10.2	16.8	22.6	7.3	5.61	(137)
3세	12.8	15.6	14.2	5.7	18.4	24.8	8.5	5.43	(141)
4세	6.8	15.1	16.4	12.3	26.0	15.1	8.2	5.30	(73)
5세	17.5	17.5	25.0	5.0	20.0	10.0	5.0	4.28	(40)
자녀연령2									
영아	11.7	16.3	18.3	5.8	17.5	21.8	8.6	5.84	(257)
유아	11.8	15.7	16.5	7.5	20.9	19.7	7.9	5.21	(254)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II-1-2]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돌봄인력 및 기관

한편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돌봐준 사람 또는 기관으로는 조부모 등 혈연이 42.7%, 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봄 40.5%, 아버지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봄 11.9%로 조사되었다(그림 III-1-2 참조). 그러나 이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4%에 불과하였다.

2. 긴급보육 시 지원 요구

자녀가 아픈 경우 지원 요구 일반과, 특히 가정으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도입할 시에 운영관련 사항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가. 자녀가 아픈 경우 지원 요구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5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서비스 13.5%,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12.1%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자녀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영유아기 전반의 수요임을 확인시켜 준다.

〈표 III-2-1〉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 서비스_전반

단위: %(명)

구분	부모 휴가를 제공함	아이돌보미 가 돌봄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 에서 돌봄	환아전문 거점 보육 시설에서 돌봄	대체교사가 가정에서 돌봄	기타	계(수)
전체	58.7	13.5	12.1	9.1	6.5	0.1	100.0(1,000)
자녀연령1							
0세	56.8	6.8	11.4	15.9	9.1	0.0	100.0(44)
1세	60.5	12.7	12.7	7.6	6.4	0.0	100.0(157)
2세	55.2	15.7	13.9	8.9	6.0	0.4	100.0(281)
3세	59.8	11.6	12.7	9.3	6.6	0.0	100.0(259)
4세	59.6	17.5	7.8	8.4	6.6	0.0	100.0(166)
5세	62.4	9.7	11.8	9.7	6.5	0.0	100.0(93)
자녀연령2							
영아	57.1	13.9	13.3	9.1	6.4	0.2	100.0(482)
유아	60.2	13.1	11.0	9.1	6.6	0.0	100.0(518)
추가 돌봄 여부							
병행	47.5	11.1	19.1	12.3	9.9	0.0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60.9	14.0	10.7	8.5	5.8	0.1	100.0(83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6.5	8.7	17.4	13.0	4.3	0.0	100.0(23)
400만원 이하	57.4	11.6	14.7	11.3	5.0	0.0	100.0(319)
600만원 이하	58.5	15.3	11.2	6.7	8.0	0.2	100.0(463)
600만원 초과	61.5	12.8	9.2	10.8	5.6	0.0	100.0(195)
거주지역							
광역시	60.1	11.1	12.1	10.6	6.3	0.0	100.0(398)
중소도시	58.1	15.0	11.9	7.8	7.1	0.2	100.0(539)
읍면지역	55.6	15.9	14.3	11.1	3.2	0.0	100.0(63)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면담자 4는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가 휴가를 얻어 직접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의 조성이 일차적인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자녀가 아플 때 직장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면, 자녀가 아픈 경우 보육서비스에 대한 별도 요구는 높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면담자 2는 자녀가 아픈 경우 돌봄시설이 인근 병원과 연계 운영된다면, 편의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즉 어린이집과 인근 병원이 연계되

어 아픈 자녀가 해당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해요. 심지어 아이가 아프고, 아침에 병원 들르고 이런 거를 전부 이해를 해주세요. (직장에서 연가는 정해져 있지 않은지 질문하자) 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플 때 사정을 말씀 드리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격리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 허락해주셨어요.(면담자 4)

(아이가 아플 때 지원방식에 대해 질문하자) 저는 큰 병원 옆에 월 세우는 것도 좋은데, 지역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는 그런게...(면담자 2)

다음으로 부모의 직접 돌봄을 제외하고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경우 희망 서비스로는 의료시설 내 부설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 29.0%로 나타난다.

반면에 대체교사 가정 파견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14.3%에 그쳤으며, 특히 0세아를 둔 가구는 유아에 비해 해당 서비스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하였다. 반면에 의료기관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0~1세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 서비스_자녀돌봄 휴가 제외 시

단위: %(명)

구분	의료기관내	아이돌보미가	환아전문	대체교사가	기타	계(수)
	부설 보육시설 에서 돌봄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거점 보육시설에 서 돌봄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전체	37.1	29.0	17.2	14.3	2.4	100.0(587)
자녀연령1						
0세	28.0	48.0	20.0	0.0	4.0	100.0(25)
1세	31.6	29.5	24.2	11.6	3.2	100.0(95)
2세	44.5	32.3	7.7	13.5	1.9	100.0(155)
3세	36.8	27.1	14.8	19.4	1.9	100.0(155)
4세	36.4	32.3	18.2	10.1	3.0	100.0(99)
5세	32.8	10.3	34.5	20.7	1.7	100.0(58)
자녀연령2						
영아	38.5	32.7	14.5	11.6	2.5	100.0(275)
유아	35.9	25.6	19.6	16.7	2.2	100.0(312)

(표 III-2-2 계속)

구분	의료기관내	아이돌보미가	환아전문	대체교사가	기타	계(수)
	부설 보육시설 에서 돌봄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거점 보육시설에 서 돌봄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30.8	23.1	38.5	7.7	0.0	100.0(13)
400만원 이하	45.4	19.1	18.6	15.3	1.6	100.0(183)
600만원 이하	29.9	34.7	17.3	14.4	3.7	100.0(271)
600만원 초과	41.7	31.7	12.5	13.3	0.8	100.0(120)
거주지역						
광역시	44.8	23.8	17.6	12.6	1.3	100.0(239)
중소도시	32.3	32.3	16.9	15.7	2.9	100.0(313)
읍면지역	28.6	34.3	17.1	14.3	5.7	100.0(35)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3> 가정파견 대체교사보다 기관을 더 선호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돌봄인력에 대한 신원 보장이 불확실해서	돌봄인력의 전문성이 의심스러워서	자녀가 낮은 돌봄인력에 적용하지 못할까봐	마음에 드는 돌봄 인력이 파견될 가능성이 낮아서	신청 절차 등 편의성이 낮아서	계(수)
	전체	31.8	26.6	25.8	9.6	6.2
자녀연령1						
0세	16.7	33.3	29.2	16.7	4.2	100.0(24)
1세	32.9	31.8	22.4	8.2	4.7	100.0(85)
2세	27.6	31.0	29.0	8.3	4.1	100.0(145)
3세	34.3	23.4	22.6	10.2	9.5	100.0(137)
4세	33.3	21.0	29.6	12.3	3.7	100.0(81)
5세	39.0	20.3	23.7	6.8	10.2	100.0(59)
자녀연령2						
영아	28.3	31.5	26.8	9.1	4.3	100.0(254)
유아	35.0	22.0	24.9	10.1	7.9	100.0(277)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6.3	43.8	31.3	6.3	12.5	100.0(16)
400만원 이하	36.0	27.0	23.0	9.0	5.0	100.0(200)
600만원 이하	32.7	20.4	27.5	11.8	7.6	100.0(211)
600만원 초과	26.0	35.6	26.9	6.7	4.8	100.0(104)

(표 III-2-3 계속)

구분	돌봄인력에 대한 신원 보장이 불확실해서	돌봄인력의 전문성이 의심스러워서	자녀가 낮선 돌봄인력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마음에 드는 돌봄 인력이 파견될 가능성이 낮아서	신청 절차 등 편의성이 낮아서	계(수)
거주지역						
광역시	26.4	30.1	26.8	10.0	6.7	100.0(239)
중소도시	36.5	25.4	24.2	9.2	4.6	100.0(260)
읍면지역	34.4	9.4	31.3	9.4	15.6	100.0(32)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아픈 자녀의 보육지원 방식으로 대체교사 파견 방식보다 기관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파견된 돌봄인력의 신원이 불확실하고(31.8%), 이들의 전문성이 의문 시되며(26.6%), 낮선 돌봄인력에 대한 자녀의 적응 문제(25.8%)도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3 참조).

맞벌이 가정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가정으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는 어린 자녀이므로 낮선 돌봄인력에 의한 개별보육이 이루어지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특히 영아를 둔 어머니들에서 두드러졌다.

(지원인력 가정 파견 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오는 분의 성향이나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베이비시터도 문제가 많아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저희는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친정 엄마가 집에 있는데 같이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어른이 아무도 없고 애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엄마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면담자 3)

(돌봄인력 파견 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자) 1세, 2세들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큰 애들은 갑자기 낮선 사람와도 말을 안하는데 자기가 아프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낮가림이 심한 시기에는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병가 쓸 때 자기 병가는 쓸 수 있는데 자녀를 위한 육아 병가는 없잖아요. 단축 근무는 안 되더라도 긴급하게 병가 같은 것을 쓰면...(면담자 2)

반면에 기관보다 가정파견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아픈 자녀를 집에서 편히 쉬게 하려고'가 5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비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표 III-2-4〉 기관보다 가정파견 대체교사를 더 선호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아픈 아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서	낮선 기관에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할 거 같아서	아픈 아이를 기관에 등원시키는 것이 힘들어서	기타	계(수)
전체	54.4	25.3	20.0	0.2	100.0(454)
자녀연령1					
0세	57.9	26.3	15.8	0.0	100.0(19)
1세	62.3	18.8	17.4	1.4	100.0(69)
2세	55.3	22.7	22.0	0.0	100.0(132)
3세	49.6	30.3	20.2	0.0	100.0(119)
4세	52.4	26.8	20.7	0.0	100.0(82)
5세	54.5	27.3	18.2	0.0	100.0(33)
자녀연령2					
영아	57.7	21.8	20.0	0.5	100.0(220)
유아	51.3	28.6	20.1	0.0	100.0(234)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	0.0	0.0	0.0	100.0(7)
400만원 이하	50.0	25.0	25.0	0.0	100.0(116)
600만원 이하	53.5	27.4	18.7	0.4	100.0(241)
600만원 초과	58.9	22.2	18.9	0.0	100.0(90)
거주지역					
광역시	50.0	28.8	21.2	0.0	100.0(156)
중소도시	55.0	24.5	20.1	0.4	100.0(269)
읍면지역	72.4	13.8	13.8	0.0	100.0(29)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구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 4는 아픈 자녀는 가정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므로 가정내 파견서비스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픈 애를 어딘 가에 또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집에서 편하게 회복하기를 바라지. 이 아픈 애를 데리고 차로 이동을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니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낮선 곳에 갖다 놓고 싶지가 않아요.(면담자 4)

나.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요구 내용

자녀가 아픈 경우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할 시에 각종

운영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 대체교사 자격요건

가정내 파견 대체교사 자격요건으로는 '보육교사와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나타난 반면, 보육교사보다 낮은 자격요건이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7.3%에 불과하였다.

〈표 III-2-5〉 가정파견 대체교사의 자격요건_인구학적 특성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교사보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교사보다 낮은 자격요건이어도 된다	계(수)
전체	60.0	32.7	7.3	100.0(1000)
자녀연령1				
0세	54.5	40.9	4.5	100.0(44)
1세	61.1	32.5	6.4	100.0(157)
2세	61.6	31.0	7.5	100.0(281)
3세	64.1	29.7	6.2	100.0(259)
4세	56.0	34.9	9.0	100.0(166)
5세	51.6	38.7	9.7	100.0(93)
자녀연령2				
영아	60.8	32.4	6.8	100.0(482)
유아	59.3	33.0	7.7	100.0(518)
추가 돌봄 여부				
병행	52.5	38.3	9.3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61.5	31.6	6.9	100.0(838)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6〉 가정파견 대체교사의 자격요건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교사보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교사보다 낮은 자격요건이어도 된다	계(수)
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	64.9	29.6	5.5	100.0(587)
파견 희망함	64.3	27.4	8.3	100.0(84)
파견 희망 안함	65.0	30.0	5.0	100.0(503)
$\chi^2(df)$		1.668(2)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연령과 상관 없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어린이집 이외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가구에서 약간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표 III-2-6 참조). 그러나 해당 응답율은 대체교사 가정내 파견 희망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 대상 심층면담에서는 돌봄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해 다양한 기준들이 제기되었다. 자격증이나 교육 시수보다는 보호가 강조되어 양육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보다 강조되는가 하면, 면담자 2, 3과 같이 해당 보육시간에 적절한 상호작용과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수요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지원 인력 자격기준에 대해 질문하자) 아이돌봄서비스에 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지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되게 강하시고, 저희 보주시는 분도 책임감이 강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의 그런 것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면담자 2)

아이가 하루 종일 지루할 거 아니에요. 방치되지 않고, 책이라도 읽어주고, 저는 아이랑 집에만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자꾸 제가 집에서 티비를 보여 준다던가 그렇게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편하게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에 가 있었으면 프로그램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 나랑 있으니까 티비만 보고 있고 지루하게 하는 일 없이 둥구는구나 하는 생각에, 파견 오신다면 그래도 그 시간을 뭔가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면담자 3)

교육의 시간이나 교육의 정도보다 경험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아이를 다루는 거는 경험에서 오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분들도 교육만 받아서는 현장에서 아이를 접했을 때 다양한 것들이 다 커버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면담자 3)

아이 상태를 잘 아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분과도 소통이 되고... 더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아기가 아프다고 애들은 하루 종일 누워있는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으면... 애들은 계속 아픈 데도 놀려고 하니까...(면담자 4)

한편 돌봄인력 양성에 관해서는 육아 경험을 갖춘 중장년 노년층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즉 여성 중장년 및 노인인력은 영유아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육아 경험과 신뢰를 겸비하였다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인력 활용에 대해 질문하자) 몸이 힘드신 그런 분들이 아닌 알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그 동네에 비공식 보육교사 인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는데, 한 엄마가 할머니를 긴급할 때 부탁을 드려서 너무 잘 지내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 투입되시는...(면담자1)

저는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낫지 않나? 더 재미있게 아이를...그리고 사람 성향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면 오히려 유아 전공자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면 보통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교육만 받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면담자3)

집에서 도와주시는 데 보육교사까지는 기대하기가 조금...그런데 인성이 어떠한지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는데 그게 제일 낮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게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경력 있으시고, 아줌마 같이, 할머니 같이 해줄 수 있어도 좋아요. 그냥 편하게 돌볼 수만 있다면...(면담자4)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신데, 거기서도 가정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를 너무 예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주 얘기 하는지 알 정도로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면 얼마든지 이용하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면담자4)

2) 서비스 비용 수준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의 희망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6,000~8,000원이 51.4%를 차지하며, 9,000원 이상이 10%선을 넘었다.

희망서비스 비용 수준은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필요 시 소득기준을 적용한 비용지원체계를 모색될 수 있다. 대체교사 파견을 희망하는 가구의 경우 희망하는 비용비용 수준은 6,000~7,000 미만과 7,000원~8,000원 미만이 각각 31.0%와 15.5%로 높게 나타났으나, 4,000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도 14.3%로 조사되었다.

<표 III-2-7> 대체교사 긴급보육 파견 시 희망 이용비용 수준

단위: %(명)

구분	3,000 ~ 4,000 ~ 5,000 ~ 6,000 ~ 7,000 ~ 8,000 ~ 9,000 ~ 10,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0,000원 이상	계(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전체	8.2	9.0	10.8	33.9	17.5	5.9	8.5	6.2	1000(1000)	
자녀연령1										
0세	11.4	6.8	11.4	34.1	15.9	4.5	11.4	4.5	1000(44)	
1세	10.8	10.2	8.9	33.8	18.5	3.8	10.2	3.8	1000(157)	
2세	7.1	10.7	9.3	35.6	18.5	4.6	8.2	6.0	1000(281)	
3세	6.9	4.2	12.7	37.8	16.6	7.3	7.3	6.9	1000(259)	
4세	9.0	12.0	9.6	27.7	18.1	7.2	9.6	6.6	1000(166)	
5세	7.5	10.8	15.1	29.0	15.1	7.5	6.5	8.6	1000(93)	
자녀연령2										
영아	8.7	10.2	9.3	34.9	18.3	4.4	9.1	5.2	1000(482)	
유아	7.7	7.9	12.2	33.0	16.8	7.3	7.9	7.1	1000(518)	
추가돌봄 여부										
병행	6.8	7.4	14.8	32.1	14.2	5.6	7.4	11.7	1000(162)	
기관단독이용	8.5	9.3	10.0	34.2	18.1	6.0	8.7	5.1	1000(838)	
월 가구소득										
20만원 이하	34.8	17.4	8.7	34.8	4.3	0.0	0.0	0.0	1000(23)	
40만원 이하	10.3	13.5	12.2	33.9	18.8	4.1	4.1	3.1	1000(319)	
60만원 이하	6.3	8.4	11.7	34.3	17.7	7.1	9.5	5.0	1000(463)	
60만원 초과	6.2	2.1	6.7	32.8	16.4	6.7	14.4	14.9	1000(195)	
거주지역										
광역시	5.5	10.3	12.1	31.9	17.6	6.8	9.0	6.8	1000(398)	
중소도시	10.0	8.3	10.0	34.1	18.2	5.0	8.5	5.8	1000(539)	
읍면지역	9.5	6.3	9.5	44.4	11.1	7.9	4.8	6.3	1000(63)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8> 돌봄인력의 이용비용 수준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명)

구분	3,000 ~ 4,000 ~ 5,000 ~ 6,000 ~ 7,000 ~ 8,000 ~ 9,000 ~ 10,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0,000원 이상	(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										
파견 희망함	7.7	8.5	9.0	35.4	17.7	5.5	8.3	7.8	(587)	
파견 희망 안함	7.1	14.3	11.9	31.0	15.5	4.8	6.0	9.5	(84)	
파견 희망 안함	7.8	7.6	8.5	36.2	18.1	5.6	8.7	7.6	(503)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3) 서비스 운영 시간

가정내 파견 대체교사를 통한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희망 시작 시각으로는 오전 8시 37.4%, 오전 9시가 34.6%로 조사되었다(표 III-2-9 참조). 서비스 병행 이용자의 경우 8시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8%, 8시가 38.3%로 상대적으로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9〉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시작 시각-전반

단위: %(명)						
구분	8시 이전	8시	9시	10시	11시 이후	계(수)
전체	7.1	37.4	34.6	5.8	15.1	100.0(1,000)
자녀연령1						
0세	4.5	36.4	40.9	6.8	11.4	100.0(44)
1세	7.6	38.9	33.8	3.8	15.9	100.0(157)
2세	7.5	35.6	35.2	7.5	14.2	100.0(281)
3세	7.7	34.0	40.2	5.0	13.1	100.0(259)
4세	6.6	42.8	28.9	7.2	14.5	100.0(166)
5세	5.4	40.9	25.8	3.2	24.7	100.0(93)
$\chi^2(df)$	21.810(20)					
자녀연령2						
영아	7.3	36.7	35.3	6.2	14.5	100.0(482)
유아	6.9	38.0	34.0	5.4	15.6	100.0(518)
$\chi^2(df)$	0.763(4)					
추가 돌봄 여부						
병행	14.8	38.3	22.8	6.2	17.9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5.6	37.2	36.9	5.7	14.6	100.0(838)
$\chi^2(df)$	12.814(4)*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3	34.8	21.7	17.4	21.7	100.0(23)
400만원 이하	6.3	32.9	39.8	5.0	16.0	100.0(319)
600만원 이하	6.7	41.5	31.5	5.2	15.1	100.0(463)
600만원 초과	9.7	35.4	34.9	7.2	12.8	100.0(195)
$\chi^2(df)$	19.585(12)					
거주지역						
광역시	8.3	34.2	34.7	4.8	18.1	100.0(398)
중소도시	6.5	39.0	34.7	6.7	13.2	100.0(539)
읍면지역	4.8	44.4	33.3	4.8	12.7	100.0(63)
$\chi^2(df)$	9.370(8)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2-10〉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시작 시각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명)						
구분	8시 이전	8시	9시	10시	11시 이후	계(수)
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	6.8	40.2	34.6	6.1	12.3	100.0(587)
파견 희망함	7.1	39.3	41.7	6.0	6.0	100.0(84)
파견 희망 안함	6.8	40.4	33.4	6.2	13.3	100.0(503)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11〉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종료 시각_전반

단위: %(명)						
구분	15시 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이후	계(수)
전체	2.9	2.9	9.4	15.7	69.1	100.0(1,000)
자녀연령1						
0세	2.3	6.8	4.5	11.4	75.0	100.0(44)
1세	3.2	6.4	9.6	16.6	64.3	100.0(157)
2세	3.6	2.5	10.3	17.1	66.5	100.0(281)
3세	2.3	1.2	12.0	17.0	67.6	100.0(259)
4세	3.6	2.4	7.8	11.4	74.7	100.0(166)
5세	1.1	2.2	4.3	16.1	76.3	100.0(93)
$\chi^2(df)$	na					
자녀연령2						
영아	3.3	4.1	9.5	16.4	66.6	100.0(482)
유아	2.5	1.7	9.3	15.1	71.4	100.0(518)
$\chi^2(df)$	6.719(4)					
추가 돌봄 여부						
병행	8.0	4.3	6.2	8.0	73.5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1.9	2.6	10.0	17.2	68.3	100.0(838)
$\chi^2(df)$	17.543(4)**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8.7	17.4	34.8	39.1	100.0(23)
400만원 이하	3.4	3.1	9.1	15.4	69.0	100.0(319)
600만원 이하	2.2	2.6	9.1	16.2	70.0	100.0(463)
600만원 초과	4.1	2.6	9.7	12.8	70.8	100.0(195)
$\chi^2(df)$	na					
거주지역						
광역시	4.3	3.5	11.3	13.8	67.1	100.0(398)
중소도시	2.0	2.4	8.2	17.3	70.1	100.0(539)
읍면지역	1.6	3.2	7.9	14.3	73.0	100.0(63)
$\chi^2(df)$	10.132(8)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서비스 종료 희망시각은 오후 6시 이후가 69.1%로 주를 이루었다(표 III-2-11 참조). 해당 비율은 특히 병행서비스 이용자에서 73.5%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교사 파견 서비스를 희망한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2〉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종료 시각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구분	15시 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이후	계(수)
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	2.2	2.9	9.4	16.5	69.0	1000(587)
파견 희망함	0.0	3.6	7.1	17.9	71.4	1000(84)
파견 희망 안함	2.6	2.8	9.7	16.3	68.6	1000(503)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4) 운영관리 사항

대체교사 긴급보육 지원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3.76점(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가 평균 3.44점, '만 36개월 미만이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는 평균 3.20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평일만 이용하거나 서비스 이용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이외 항목들에 비해 낮았다.

〈표 III-2-13〉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종합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	0.8	6.0	27.9	46.8	18.5	1000(1000)	3.76
만 36개월 미만이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	4.6	19.3	37.5	28.6	10.0	1000(1000)	3.20
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8	14.3	31.5	38.5	12.9	1000(1000)	3.44
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가 전액 부담한다	14.2	25.1	32.7	22.4	5.6	1000(1000)	2.80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12.4	21.6	29.9	28.3	7.8	1000(1000)	2.98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한다	1.8	7.2	34.6	42.4	14.0	1000(1000)	3.60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이용절차로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II-2-13 참조).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통한 돌봄인력을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이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있었다.

〈표 III-2-14〉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_전체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0.8	6.0	27.9	46.8	18.5	100.0(1,000)	3.76	
자녀연령1								
0세	0.0	11.4	22.7	50.0	15.9	100.0(44)	3.70	
1세	1.3	5.1	31.2	43.9	18.5	100.0(157)	3.73	
2세	0.4	5.3	29.5	46.6	18.1	100.0(281)	3.77	0.451
3세	0.8	6.6	27.4	47.9	17.4	100.0(259)	3.75	
4세	1.2	3.6	24.7	50.6	19.9	100.0(166)	3.84	
5세	1.1	9.7	26.9	40.9	21.5	100.0(93)	3.72	
자녀연령2								
영아	0.6	5.8	29.5	46.1	18.0	100.0(482)	3.75	-0.394
유아	1.0	6.2	26.4	47.5	18.9	100.0(518)	3.77	
추가 돌봄 여부								
병행	1.9	8.0	27.8	43.2	19.1	100.0(162)	3.70	-0.814
기관 단독 이용	0.6	5.6	27.9	47.5	18.4	100.0(838)	3.77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3	17.4	30.4	26.1	21.7	100.0(23)	3.43	
400만원 이하	0.6	8.5	32.6	41.4	16.9	100.0(319)	3.66	3.468*
600만원 이하	0.6	5.2	25.3	49.5	19.4	100.0(463)	3.82	
600만원 초과	1.0	2.6	26.2	51.8	18.5	100.0(195)	3.84	
거주지역								
광역시	0.8	6.5	30.4	45.7	16.6	100.0(398)	3.71	
중소도시	0.7	5.2	26.5	48.2	19.3	100.0(539)	3.80	1.374
읍면지역	1.6	9.5	23.8	41.3	23.8	100.0(63)	3.76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2-15〉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	0.5	3.9	27.6	48.9	19.1	100.0(587)	3.82	
파견 희망함	0.0	7.1	22.6	47.6	22.6	100.0(84)	3.86	0.446
파견 희망 안함	0.6	3.4	28.4	49.1	18.5	100.0(503)	3.82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16〉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만 36개월 미만아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_전체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4.6	19.3	37.5	28.6	10.0	100.0(1,000)	3.20	
자녀연령1								
0세	4.5	11.4	43.2	31.8	9.1	100.0(44)	3.30	
1세	5.1	20.4	37.6	28.0	8.9	100.0(157)	3.15	
2세	5.7	20.6	39.1	27.4	7.1	100.0(281)	3.10	1.834
3세	3.9	20.5	37.5	29.0	9.3	100.0(259)	3.19	
4세	4.2	17.5	36.1	28.9	13.3	100.0(166)	3.30	
5세	3.2	17.2	32.3	30.1	17.2	100.0(93)	3.41	
자녀연령2								
영아	5.4	19.7	39.0	28.0	7.9	100.0(482)	3.13	-2.060*
유아	3.9	18.9	36.1	29.2	12.0	100.0(518)	3.26	
추가 돌봄 여부								
병행	8.0	18.5	38.9	26.5	8.0	100.0(162)	3.08	-0.876
기관 단독 이용	3.9	19.5	37.2	29.0	10.4	100.0(838)	3.22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13.0	43.5	13.0	30.4	100.0(23)	3.61	
400만원 이하	4.4	21.6	34.5	28.8	10.7	100.0(319)	3.20	1.532
600만원 이하	5.4	19.4	37.1	29.2	8.9	100.0(463)	3.17	
600만원 초과	3.6	15.9	42.6	28.7	9.2	100.0(195)	3.24	

(표 III-2-16 계속)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거주지역								
광역시	4.0	17.3	36.2	31.7	10.8	100.0(398)	3.28	2.021
중소도시	4.6	20.8	38.8	27.1	8.7	100.0(539)	3.14	
읍면지역	7.9	19.0	34.9	22.2	15.9	100.0(63)	3.19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2-17〉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만 36개월 미만아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대체교사파견희망 여부	3.7	17.2	36.8	30.8	11.4	100.0(587)	3.29	0.432
파견 희망함	3.6	19.0	33.3	28.6	15.5	100.0(84)	3.33	
파견 희망 안함	3.8	16.9	37.4	31.2	10.7	100.0(503)	3.28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18〉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_전체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2.8	14.3	31.5	38.5	12.9	100.0(1,000)	3.44	
자녀연령1								
0세	0.0	9.1	34.1	43.2	13.6	100.0(44)	3.61	1.914
1세	5.1	13.4	33.8	36.3	11.5	100.0(157)	3.36	
2세	3.2	17.4	28.1	41.3	10.0	100.0(281)	3.37	
3세	2.7	12.0	31.3	40.9	13.1	100.0(259)	3.50	
4세	1.2	16.3	36.7	33.1	12.7	100.0(166)	3.40	
5세	2.2	11.8	28.0	34.4	23.7	100.0(93)	3.66	

(표 III-2-18 계속)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자녀연령2								
영아	3.5	15.4	30.5	39.8	10.8	100.0(482)	3.39	-1.682
유아	2.1	13.3	32.4	37.3	14.9	100.0(518)	3.49	
추가 돌봄 여부								
병행	1.9	16.7	32.1	34.0	15.4	100.0(162)	3.44	-0.343
기관 단독 이용	3.0	13.8	31.4	39.4	12.4	100.0(838)	3.44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8.7	43.5	30.4	17.4	100.0(23)	3.57	
400만원 이하	2.8	12.9	36.4	37.0	11.0	100.0(319)	3.40	0.525
600만원 이하	3.2	15.1	29.2	39.3	13.2	100.0(463)	3.44	
600만원 초과	2.1	15.4	27.7	40.0	14.9	100.0(195)	3.50	
거주지역								
광역시	1.5	11.6	31.2	42.5	13.3	100.0(398)	3.55	3.727*
중소도시	3.2	16.3	31.7	36.5	12.2	100.0(539)	3.38	
읍면지역	7.9	14.3	31.7	30.2	15.9	100.0(63)	3.32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2-19〉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대체교사 파견희망 여부	1.5	13.3	31.9	38.5	14.8	100.0(587)	3.52	
파견 희망함	3.6	21.4	22.6	33.3	19.0	100.0(84)	3.43	-0.800
파견 희망 안함	1.2	11.9	33.4	39.4	14.1	100.0(503)	3.53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20〉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가 전액 부담한다_전체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4.2	25.1	32.7	22.4	5.6	100.0(1,000)	2.80	
자녀연령1								
0세	9.1	31.8	27.3	27.3	4.5	100.0(44)	2.86	0.357
1세	16.6	19.7	37.6	19.1	7.0	100.0(157)	2.80	
2세	12.5	26.0	34.5	22.4	4.6	100.0(281)	2.81	
3세	15.4	26.3	30.9	23.6	3.9	100.0(259)	2.74	
4세	13.3	26.5	28.3	22.9	9.0	100.0(166)	2.88	
5세	16.1	22.6	34.4	21.5	5.4	100.0(93)	2.77	
자녀연령2								
영아	13.5	24.5	34.9	21.8	5.4	100.0(482)	2.81	0.281
유아	14.9	25.7	30.7	23.0	5.8	100.0(518)	2.79	
추가 돌봄 여부								
병행	14.2	24.7	36.4	19.8	4.9	100.0(162)	2.77	0.054
기관 단독 이용	14.2	25.2	32.0	22.9	5.7	100.0(838)	2.81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7.4	34.8	30.4	13.0	4.3	100.0(23)	2.52	4.981**
400만원 이하	18.8	25.7	31.7	19.4	4.4	100.0(319)	2.65	
600만원 이하	12.7	26.1	32.8	21.8	6.5	100.0(463)	2.83	
600만원 초과	9.7	20.5	34.4	29.7	5.6	100.0(195)	3.01	
거주지역								
광역시	12.8	21.9	29.6	29.1	6.5	100.0(398)	2.95	7.556***
중소도시	13.9	27.3	35.3	18.7	4.8	100.0(539)	2.73	
읍면지역	25.4	27.0	30.2	11.1	6.3	100.0(63)	2.46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p < .001$.

〈표 III-2-21〉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가 전액 부담한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표 III-2-21 계속)

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	15.7	23.7	32.4	23.7	4.8	100.0(587)	2.78	
파견 희망함	20.2	28.6	26.2	19.0	6.0	100.0(84)	2.62	-1.462
파견 희망 안함	14.9	22.7	33.4	24.5	4.6	100.0(503)	2.81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1-22〉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토,일,공휴일 제외)_전체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2.4	21.6	29.9	28.3	7.8	100.0(1,000)	2.98	
자녀연령1								
0세	15.9	18.2	25.0	36.4	4.5	100.0(44)	2.95	
1세	6.4	17.2	34.4	27.4	14.6	100.0(157)	3.27	3.335**
2세	13.9	23.5	29.2	27.4	6.0	100.0(281)	2.88	
3세	11.2	23.2	29.0	30.9	5.8	100.0(259)	2.97	
4세	12.7	20.5	29.5	28.3	9.0	100.0(166)	3.01	
5세	19.4	22.6	30.1	21.5	6.5	100.0(93)	2.73	
자녀연령2								
영아	11.6	21.0	30.5	28.2	8.7	100.0(482)	3.01	1.054
유아	13.1	22.2	29.3	28.4	6.9	100.0(518)	2.94	
추가 돌봄 여부								
병행	18.5	24.1	28.4	22.2	6.8	100.0(162)	2.75	-1.151
기관 단독 이용	11.2	21.1	30.2	29.5	8.0	100.0(838)	3.02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8.7	21.7	52.2	8.7	8.7	100.0(23)	2.87	
400만원 이하	15.0	20.7	31.0	25.7	7.5	100.0(319)	2.90	0.844
600만원 이하	11.4	23.1	27.2	30.0	8.2	100.0(463)	3.00	
600만원 초과	10.8	19.5	31.8	30.8	7.2	100.0(195)	3.04	
거주지역								
광역시	10.8	17.8	28.9	33.2	9.3	100.0(398)	3.12	5.868**
중소도시	12.8	24.3	30.8	25.4	6.7	100.0(539)	2.89	
읍면지역	19.0	22.2	28.6	22.2	7.9	100.0(63)	2.78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표 III-2-23〉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토,일,공휴일 제외)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	12.3	18.7	31.3	29.3	8.3	100.0(587)	3.03	
파견 희망함	11.9	25.0	23.8	23.8	15.5	100.0(84)	3.06	0.257
파견 희망 안함	12.3	17.7	32.6	30.2	7.2	100.0(503)	3.02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24〉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한다_전체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8	7.2	34.6	42.4	14.0	1000(1,000)	3.60	
자녀연령1								
0세	2.3	11.4	36.4	43.2	6.8	1000(44)	3.41	
1세	1.3	7.0	38.2	38.9	14.6	1000(157)	3.59	
2세	1.8	8.2	36.3	39.5	14.2	1000(281)	3.56	1.682
3세	1.9	7.7	32.8	47.9	9.7	1000(259)	3.56	
4세	1.8	5.4	33.1	43.4	16.3	1000(166)	3.67	
5세	2.2	4.3	30.1	39.8	23.7	1000(98)	3.78	
자녀연령2								
영아	1.7	8.1	36.9	39.6	13.7	1000(482)	3.56	-1.387
유아	1.9	6.4	32.4	45.0	14.3	(518)	3.63	
추가 돌봄 여부								
병행	1.2	12.3	37.7	35.8	13.0	1000(162)	3.47	-0.899
기관 단독 이용	1.9	6.2	34.0	43.7	14.2	1000(888)	3.62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3	8.7	52.2	13.0	21.7	1000(23)	3.39	
400만원 이하	1.3	8.2	39.5	37.0	14.1	1000(319)	3.55	1.180
600만원 이하	2.4	6.7	30.0	46.2	14.7	1000(463)	3.64	
600만원 초과	1.0	6.7	35.4	45.6	11.3	1000(195)	3.59	

(표 III-2-24 계속)

거주지역								
광역시	1.8	7.0	30.9	47.0	13.3	100(398)	3.63	1.228
중소도시	1.9	7.6	36.7	40.4	13.4	100(539)	3.56	
읍면지역	1.6	4.8	39.7	30.2	23.8	100(63)	3.70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II-2-25〉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_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한다_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별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평균 (5점)	t/F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대체교사 파견 희망 여부	0.7	5.5	34.6	44.3	15.0	100.0(587)	3.67
파견 희망함	1.2	7.1	17.9	48.8	25.0	100.0(84)	3.89
파견 희망 안함	0.6	5.2	37.4	43.5	13.3	100.0(503)	3.64

주: 1)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IV.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 개별 가정으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세부 운영 사항을 제시하였다.

1.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지원의 기본 방향

어린이집의 종일제 보육과 연중 운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시 어려움은 일·가정 양립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다.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가정에서도 긴급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78.9%에 달하였다. 게다가 이 같은 긴급보육의 어려움은 두 달에 1회(35.0%) 또는 한 달에 1회(28.5%)가 주를 이루며, 한 달에 2회 경험하는 비율도 13.8%로 나타났다.

이때 특히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긴급보육의 주요 양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빈도는 연간 평균 5.2회이고 0세아의 경우는 연간 7.8회로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으나 부모가 휴가를 내지 못한 경우는 주로 조부모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인(42.7%), 조부모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경우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맞벌이 가정의 보육지원은 맞벌이 가정 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아픈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보육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이때 보육서비스 지원 방식을 모색하기에 앞서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직장 환경의 조성은 일차적인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가족돌봄휴가를 제공하되, 이때 휴가일수는 연가일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부모조사 결과에서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간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58.7%로 가장 선호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픈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아동 또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보육지원 요구가 다르므로,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른 일본 사례에서도 같이 가정형과 시설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 연구의 부모 조사결과에서도 자녀가 아픈 경우는 가장 높은 선호도를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37.1%, 환아전문 보육시설에서 돌봄 17.2%,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14.3%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아픈 자녀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은 1) 어린이집(거점)이 운영하는 전문 환아보육실, 2) 병원이나 의사회가 운영하는 병원내 보육실, 3) 가정방문형으로 서비스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단, 이때 3)번의 경우는 현재 질병감염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둘째,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비스 전달체계 등 정책 여건도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즉 맞벌이 가구의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는 영유아가 밀집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지역적 여건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가정내 파견서비스를 위한 대체교사풀 구축은 지역별로 인력 확보의 여건이 매우 다른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사업이 운영되는데, 해당 사업의 운영방식 및 지원내용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그 양상도 상이하다. 단적으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경우는 현행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업주체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긴급보육 지원의 적용대상을 명료화하고 특히 질병 아동의 경우는 그 유형을 세분화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병 아동의 경우는 각 서비스 유형별로 적용대상 아동 범위와 증상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아픈 아동의 경우 제공되는 긴급보육 서비스의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은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하게 만 3개월 이상이거나 일본 사례와 같이 6개월 이상 자녀로 한정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병세 및 증상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유형을 판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단적으로 위급한 병세인 경우는 전문 의료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이 적합하나,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면 되는 증상인 경우는 가정내 파견서비스가 보다 선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픈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세부 적용대상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등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골절 등 집단보육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 등을 포괄할지에 대한 판단도 요구된다.

2.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자녀가 질병감염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육지원의 기본 방향은 아동 및 부모 여건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때 대체교사 파견 방식은 감염 우려로 단순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에 한하여 익숙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므로 다양한 서비스 유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당초 제시한 연구 목적에 따라 대체교사를 개별 가정으로 긴급 파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각 세부 방안별로 고려점도 제시하였다.

가. 대체교사 긴급지원의 타당성 진단

부모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질병감염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서비스는 이외 유형들에 비해 부모 선호도가 높지 않으며,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우려사항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대체교사 모집 시 가정내 파견형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 입장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에 비해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 서비스 관리 기관의 입장에서 연간 인력수급 계획 및 관리의 어려움과 직결된다.

둘째,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보육으로 대체교사의 감염 우려가 높아 건강상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는 첫 번째 지적한 모집의 어려움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아픈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파견된 대체교사가 감염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초래되므로, 인력 채용 시 어려움은 물론, 안정적인 인력풀의 유지 및 관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시 말해 격리를 요하는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보육이 의료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돌봄인력의 감염 위험을 해소할 방안이 근본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이다.

셋째, 일회성 서비스 이용으로 대체교사에 대한 부모 신뢰도 및 만족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는 본 연구의 영유아 부모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자녀가 아픈 경우 가정내 파견 방식보다 기관보육을 더 선호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돌봄인력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은 점(31.8%)과 전문성에 대한 의혹(26.6%)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별보육의 특성상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고, 특히 아픈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운영 기준을 요하므로 아동 안전 및 보호 관련 요건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안전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아픈 아동에 대한 안전과 돌봄인력의 책임 소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명료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기존 사업들 즉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관계 정립도 사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은 기존 어린이집 지원에 추가하여 가정내 파견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장 여건 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지자체 사업내용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 방식 및 사업규모가 상이하고 지원 수준도 다르므로 가정내 파견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운영 시에는 이들 사업과의 관련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우려와 고려사항들을 종합하면, 자녀가 아픈 경우 보육서비스 지원은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방식보다는 의료기관내 보육시설 설치와 환아전문 보육시설을 각 자치구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가정내 파견서비스 제공 인력은 보육교사 보다는 전문의료인력이 보다 적합할 수 있으며, 사업 중복성 측면에서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 특별지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자치구내 위탁기관(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서비스 연계 강

화가 요구된다.

나. 대체교사 긴급지원의 세부 운영사항 및 고려점

대체교사 긴급지원의 낮은 사업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사항을 모색 하되 필요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원범위의 명료화

지원범위로는 아동 연령과 증상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연령은 일본과 서울시에서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후 아동에 적용한다. 또한 일회성 개별보육의 특성과 아픈 아동의 경우는 영아(36개월 미만아)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반 시 이용가능하다는 기준을 고려할만하다.

다음으로 적용대상 증상으로는 일본 오키나와현 사례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에 의한 입원, 치료 필요는 없으나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 일상적인 질환(감시, 소화불량 등), 전염성 질환(홍역, 수두, 풍진 등), 외상성 질환(열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이때 각 증상별로 운영 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전염성 질환인 경우는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보육실 설치 기준과 담당 인력의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인력 양성 및 처우

기존 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돌봄인력(대체교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픈 아동에 대한 개별보육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대체교사 교육내용 이외에도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 전문성 강화는 곧 돌봄인력의 노동자성 즉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처우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대체교사의 기본급 및 최소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자격요건 및 교육내용

(1) 채용 및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되, 노인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만하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부모들은 지역내 어르신들을 육아경험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대체교사의 결격사유를 명시한다. 즉 대체교사 신청 제외자로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

한편 대체교사의 모집은 각 시·군·구(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파견할 교사와 가정에 파견할 교사를 구분하여 채용하고, 이하 교육내용 및 사후관리 체계도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2) 교육내용

교육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비교하여 아픈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직무기본교육 이외에도 직무심화교육 과목으로는 아동 질병과 증상별 간병 방법, 아픈 아동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 응급 상황 대처 및 위험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나) 근로여건 및 처우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월 30시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서울시: 월 20만원+수당)지급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되, 이들의 불안정한 급여 구조를 감안하여 특별지원으로 서울시에서와 같이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원을 고려할만하다.

다) 사후관리

가정으로 파견되는 대체교사는 개별보육을 실시하므로 부모 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를 대체교사에게 전달하여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에도 활용한다.

3) 지원내용 및 이용비용 수준

서비스 내용은 가정내 보육활동, 병원 동행 서비스,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귀가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당 7,000원에서 8,000원선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시간당 6,500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대체교사의 전문성이 반영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부모조사 결과에서 대체교사 파견서비스의 희망 이용비용은 6,000~8,000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해당 비용의 지불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대체교사에 대한 기존의 여비 지급 기준 이외에도 병원동행서비스 시의 여비 등에 대한 규정 마련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서비스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우선 이용한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로서 처방전 1부와 기관 미이용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를 위한 재정 분담은 일본에서와 같이 국고,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수준으로 분담한다.

4) 서비스 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 시각과 동일하게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운영하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1~2시간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시작 시각은 8시부터 9시 이전이 3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종료시각은 오후 6시 이후를 희망하는 비율이 6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서비스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71.4%).

또한 평일에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지역 수요에 따라 토요일 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추진체계 및 시범사업 실시

가) 추진체계

대체교사 긴급보육 지원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즉 가정으로 파견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현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추진하되, 기존의 어린이집 대체교사와는 구분되는 채용 및 임면, 교육내용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급여체계도 이원화하고, 별도 담당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한다.

(1) 업무 추진체계

사업 실시 주체는 자치구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한다.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재한 지역에서는 시·도 센터가 해당 지역까지 관할하고 필요시 권역별로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광역 단위에서 대체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모집 및 교육 실시, 사후관리 등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포항시에서와 같이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추진하거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대체교사들의 가정내 파견 시 직면하는 응급 의료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현행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준하는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할 시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대체교사 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교육자료 제작 등)을 규정하여 각 시·군·구 및 시·도 센터에서 일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신청 방식 및 절차

신청 방식은 유선으로 가능하게 하되,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여 일괄 처리되는 방식을 부모들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을 통한 대체교사의 파견은 특히 보육활동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아동에 대한 특성 등이 파견되는 대체교사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으로 다원화하여 부모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하다. 이때 특히 어린이집에 대상으로 긴급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방법 및 절차를 부모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책자 등을 일괄 보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

한편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내 대체교사를 이용할 시에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과 함께 미등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체교사의 산재보험과 더불어 이용자녀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시범사업 실시

아픈 아동의 개별보육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측면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과는 구분되는 운영관리 상 기준이 요구되므로 사업 도입 이전에 반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이때 동 사업의 활성화를 감안하여 시범사업의 실시 지역은 영유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현행 지자체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배정한다.

또한 시범 기관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365어린이집 등)을 지정하여 아픈 아동에 대한 대체교사 신청 공지,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참고문헌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_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이진숙·최인선(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6).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망 구축 계획.
- 서울특별시(2017).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조주은(201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포항시 정책기획관(2017). 2017년 8월중 주요업무계획.

[온라인 자료]

- 경북일보(2017.07.04). “포항시, 바쁜 엄마·아빠 안심 ‘원더맘마’ 출동”. (검색일자: 2017. 10. 25)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no=9978573>

- 도쿄도 NPO법인 플로렌스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 <http://byojihoiku.florence.or.jp/>
- 매일신문(2017.08.09). “포항시 ‘원더마마 서비스’ 협력병원 협약”. (검색일자: 2017. 10. 25)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5793&yy=2017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08. 30.) <https://www.idolbom.go.kr/use/infect.go>
- 일반사단법인 전국 환아 보육 협의회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 <http://www.byoujihoiku.net/about/index.html>
-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환아 보육 사업의 현황과 과제’(검색일자: 2017. 11 19) http://www8.cao.go.jp/kisei-kaikaku/minutes/wg/2007/1001/item_071001_02.pdf
-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환아 보육 사업에 대해’(2013. 11. 25). (검색일자: 2017. 11 19)http://www8.cao.go.jp/shoushi/shinseido/meeting/kodomo_kosodate/b_8/pdf/pd-2.pdf
- 일본 정부 홍보 홈페이지.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 (검색일: 2017. 11. 19)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10/1.html#section1>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건강일본21’ (검색일자: 2017. 11. 19) http://www1.mhlw.go.jp/topics/kenko21_11/top.html
- 오키나와현 가데나초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육 사업에 대해’. (검색일자: 2017. 11. 19) <http://www.town.kadena.okinawa.jp/life/kur135.html>
- 위키백과 홈페이지. ‘病兒保育’ 항목. (검색일자: 2017. 11. 19) <https://ja.wikipedia.org/wiki/%E7%97%85%E5%85%90%E4%BF%9D%E8%82%B2>
- 주간동아(2016.11.16). “속 터지는 ‘아이돌봄서비스’”. (검색일자: 2017. 10. 25) <http://weekly.donga.com/3/all/11/779289/1>
- 파주시 홈페이지(2017.03.10). 2017년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문(신청서 포함). (검색일자: 2017. 11. 16) 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_view.do?bbsCd=1022&q_ctgCd=4064&sseq=20170310093317544
- 파주시 보도자료(2017.04.26). “파주시, 긴급(당일) 아이돌봄 서비스 시행”. (검색

일자: 2017. 10. 25) <http://search.paju.go.kr/paju/search/search.jsp>

한국일보(2017.08.07.). “호응은 좋은데 하나둘씩 떠나는 아이돌보미”. (검색일자: 2017. 10. 25) <http://hankookilbo.com/v/6773a0643ab84fc8b96429ab989f17fd>

효고현 니시노미야 시 홈페이지. ‘방문형 환아, 병후 아동 보육 이용료 지원 제도’. (검색일자: 2017. 11. 19) <http://www.nishi.or.jp/media/2016/houmongata.pdf>

NPO법인 플로렌스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19) <http://byojihoiku.florence.or.jp>

부록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모용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모용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자녀가 아픈 경우 등)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 아 정 책 연 구 소

8-2. 아픈 자녀를 가정에 파견한 돌봄인력 보다 기관에 맡기는 것을 더 원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① 돌봄인력에 대한 신원 보장이 불확실해서
- ② 자녀가 낯선 돌봄인력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 ③ 돌봄인력의 전문성이 의심스러워서
- ④ 마음에 드는 돌봄 인력이 파견될 가능성이 낮아서
- ⑤ 신청 절차 등 편의성이 낮아서(신청 시 곧바로 이용하기 어려울 거 같아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8-3. 아픈 자녀를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가정으로 파견된 돌봄인력이 돌보는 것을 더 원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① 아픈 아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서
- ② 낯선 기관에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할 거 같아서
- ③ 아픈 아이를 기관에 등원시키는 것이 힘들어서
- ④ 기타(구체적으로):

※ 이하 문 9~12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픈 경우, 정부가 돌봄인력(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표기해주시시오,

9. 귀하는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픈 경우 집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의 자격요건은 어느 수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보육교사보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보육교사보다 낮은 자격요건이어도 된다

10. 귀하는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픈 경우 집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의 이용비용은 **시간당** 얼마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00~4,000원 미만
- ② 4,000~5,000원 미만
- ③ 5,000~6,000원 미만
- ④ 6,000~7,000원 미만(※ 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수준)
- ⑥ 7,000~8,000원 미만
- ⑦ 8,000~9,000원 미만
- ⑧ 9,000~10,000원 미만
- ⑨ 10,000원 이상

11. 귀하는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픈 경우 집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의 서비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 시각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표기 방식(예시): 오후 4시 10분인 경우는 하원 시각란에 16시 10분으로 표기	
11-1. 서비스 시작 시각	11-2. 서비스 종료 시각
() 시 () 분	() 시 () 분

12. 귀하께서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픈 경우 가정에 파견하는 돌봄인력을 이용하는 경우 이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표기해주시십시오.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파견 내용	돌봄인력 이용 시 동의 정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1	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 36개월 미만이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가 전액 부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토일공휴일 제외)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응답 가구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질문입니다.

D1. 연령	만 ()세	
D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D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③ 4년제 대학 이상	④ 대학원 이상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육아정책연구소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수요_심층면담 질문지_부모용

<p>1. 아동 및 가구 특성/양육 실태 전반</p>
<p>1) 자녀 및 가구 특성은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총 자녀수, 자녀 연령(막내자녀 연령 및 출생순위 확인) - 가구 특성: 부모의 취업 여부/근로 특성(교대제/야간근로 등 포함)/평균 근로시간
<p>2) 주양육자 등 자녀양육 실태는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양육자: 기관 이용 여부 등 - 기관 이용 현황 시: 최초 이용 시기 및 총 이용 기간, 기관 변경 여부 및 의향 - 기관 미이용 시: 미이용 사유, 희망 기관 이용 시기(자녀 연령) 및 기관유형 - 자녀 연령별 서비스 유형별 이용 추이
<p>2.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긴급보육 시 애로사항</p>
<p>1)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만족도는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등 이용 현황 - 긴급보육 시 보육 실태: 주된 긴급보육 상황, 대리 양육자 등 - 자녀가 아플 때 대응 경험
<p>2) 긴급보육 시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와 도움 정도는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용 시 발생하는 긴급보육 유형 - 긴급보육 시 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개선 요구

3. 긴급보육 시(특히 자녀가 아플 때) 대체교사 파견에 대한 수요

1) 자녀가 아플 때 가정으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및 이용 의향은 어떠합니까?

- 타 서비스 대비 선호도
- 타 서비스 대비 장단점

2) 대체교사 파견 방식 및 비용: 이용 기간, 신청 방식

3) 대체교사 전문성 수준에 대한 의견: 자격요건(아이돌봄서비스, 보육교사 등과 비교)

4) 자녀가 아플 때 자녀돌봄의 선호도 및 요구 전반: 지역내 노인인력 활용 등

연구보고 2017-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정인애드 02) 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30-5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